창원 한신더휴 메가센텀 모집공고 정정공고

2026.07.16.(목) 아시아 경제 및 창원한신더휴메가센텀 홈페이지에 공고한 [창원한신더휴메가센텀 입주자 모집공고]를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 정정사항

정정내역	P39. ■ 계약자 중도금 대출 안내 내용 정정
당초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하여 지정하는 대출금융기관에서 대출 진행시 본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중도금 무이자” 조건으로 전체 공급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시행할 예정이며,중도금 대출 이자는 분양계약의 정상적 이행조건하에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할 월상환 대출이자를 중도금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와 시공사가 대납하기로 하며 (단, 사업주체 등이 지정한 중도금 대출기관의 중도금 대출이자만 해당하며, 관련 정책 및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비율을 제한받아 계약자가 자기 책임하에 조달한 중도금에 대한 대출이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계약자는 입주시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사업주체가 대납한 중도금 대출이자 등을 일시 납부하여야하며(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될 수 있으며,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 등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로부터 발생하는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정정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하여 지정하는 대출금융기관에서 대출 진행시 본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중도금 무이자” 조건으로 전체 공급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시행할 예정이며, 중도금 대출 이자는 분양계약의 정상적 이행조건하에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할 월상환 대출이자를 중도금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와 시공사가 대납하기로 하며, (단, 사업주체 등이 지정한 중도금 대출기관의 중도금 대출이자만 해당하며, 관련 정책 및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비율을 제한받아 계약자가 자기 책임하에 조달한 중도금에 대한 대출이자는 해당 되지 않습니다.)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2026.07.24.

창원 한신더휴 메가센텀 입주자모집공고

청약Home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1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055-295-1117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	창원시 거주자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거주자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없음	없음	없음	미적용	민간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6.07.16.(목)	2026.07.27.(월)	2026.07.28.(화)	2026.07.29.(수)	2026.08.04.(화)	2026.08.07.(금)~ 2026.08.11.(화)	2026.08.18.(화)~ 2026.08.20.(목)

2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6.06.1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생아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1순위(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가입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적용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동점 시 추첨)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cw-thehue.com)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최초 청약접수일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청약자격 및 순위 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산정)
  ※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하여야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국민주택 청약 시 기존 청약통장가입일을 기준으로 순위산정)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주택법」제65조 및「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에 따라「주택법」제64조 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KB국민 인증서	토스 인증서	신한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APT	O		O				
APT잔여세대 (무순위 / 임의공급 / 불법행위재공급)	O		X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3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7.16.(목)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창원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 및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창원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026.07.27.(월)	2026.07.28.(화)	2026.07.29.(수)	2026.08.04.(화)	2026.08.07.(금)~ 2026.08.11.(화)	2026.08.18.(화)~ 2026.08.20.(목)
방 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사업주체 견본주택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 (PC·모바일) 청약홈	▪ 창원 한신더휴 메가센텀 견본주택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 480-31번지)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견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비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창원시 마산회원구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실제 거래가격 6억원 이상의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없음	없음

4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창원시 도시재생과-10922호(2026.07.15.)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 480-31번지 일대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7~27층 21개동 총 2,016세대 중 일반분양 1,139세대 (조합 725세대 및 보류 19세대, 임대 133세대 제외)
[특별공급 581세대(기관추천 104세대, 다자녀가구 114세대, 신혼부부 156세대, 노부모부양 33세대, 생애최초 75세대, 신생아 99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9년 08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세대)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신생아	계		
2026000282	01	38.0314A	38A	38.0314	12.5199	50.5513	33.3267	83.8780	19.0048	16	2	1	2	-	1	1	7	9	-
			38A-1	38.0314	12.8960	50.9274	33.3267	84.2541	19.1462										
	02	46.9070A	46A	46.9070	14.8178	61.7248	41.1042	102.8290	23.2055	13	2	1	2	-	1	1	7	6	-
			46A-1	46.9070	15.2817	62.1887	41.1042	103.2929	23.3799										
	03	59.9783A	59A-1	59.9783	20.0154	79.9937	52.5586	132.5523	30.0737	14	2	1	3	-	1	1	8	6	1
	04	74.9730A	74A	74.9730	23.0767	98.0497	65.6983	163.7480	36.8618	217	22	22	34	7	15	22	122	95	10
			74A-1	74.9730	23.8181	98.7911	65.6983	164.4894	37.1406										
	05	74.9705B	74B	74.9705	23.4625	98.4330	65.6962	164.1292	37.0059	76	8	8	12	2	7	8	45	31	3
			74B-1	74.9705	24.2039	99.1744	65.6962	164.8706	37.2847										
	06	84.9692A	84A	84.9692	26.4193	111.3885	74.4579	185.8464	41.8766	356	36	36	55	11	26	36	200	156	39
			84A-1	84.9692	27.2596	112.2288	74.4579	186.6867	42.1925										
	07	84.9734B	84B	84.9734	26.2049	111.1783	74.4617	185.6400	41.7976	26	5	3	5	1	2	3	19	7	2
	08	84.9704C	84C	84.9704	27.5113	112.4817	74.4591	186.9408	42.2876	268	27	27	43	8	22	27	154	114	12
			84C-1	84.9704	28.3516	113.3220	74.4591	187.7811	42.6035										
	09	101.9695A	101A	101.9695	30.5243	132.4938	89.3553	221.8491	49.8111	76	-	8	-	2	-	-	10	66	10
			101A-1	101.9695	31.5327	133.5022	89.3553	222.8575	50.1903										
	10	101.9772B	101B	101.9772	30.5699	132.5471	89.3620	221.9091	49.8312	73	-	7	-	2	-	-	9	64	4
			101B-1	101.9772	31.5783	133.5555	89.3620	222.9175	50.2103										
	11	136.5534A	136A	136.5534	44.4503	181.0037	119.6609	300.6646	68.0485	3	-	-	-	-	-	-	-	3	-
			136A-1	136.5534	45.8006	182.3540	119.6609	302.0149	68.5561										
	12	136.9291B	136B	136.9291	44.1023	181.0314	119.9902	301.0216	68.0589	1	-	-	-	-	-	-	-	1	-
	합 계									1,139	104	114	156	33	75	99	581	558	81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공급안내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 시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2)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 환산방법 : 공급면적(m2)×0.3025 또는 공급면적(m2)÷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벽체, 주동출입구 등의 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등 주민공동시설, 시니어클럽(경로당), 키즈클럽(보육시설), 기계/전기실, 지하주차장, 경비실 등을 포함한 기타면적입니다.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기하여 면적 합산 과정에서 일부 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소수점 이하의 면적이 변경되는 것은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의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63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건축시설의 분양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입주 시 지적확정측량 결과 및 공부정리 결과에 따른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소수점 이하의 면적이 변경되는 것은 공급가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물량 중 신청접수 미달 물량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공급 합니다. 단, 특별공급 전체 신청물량이 공급물량에 미달할 경우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은 특별공급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층·호별 구분 없이 청약 순위별 및 주택형별로 접수하여 관계 법령 등에 의거 전산으로 무작위 추첨하여 동·호수가 자동 배정됩니다.
※ 각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의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63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건축시설의 분양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및 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수 있습니다. 단, 소수점 이하의 면적변경에 따른 분양가 정산은 없습니다.
※ 최하층 우선 배정세대는 총 공급세대(1,139세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약식 표기

구분	38.0314A	46.9070A	59.9783A	74.9730A	74.9705B	84.9692A	84.9734B	84.9704C	101.9695A	101.9772B	136.5534A	136.9291B
약식 표기	38A	46A	-	74A	74B	84A	84B	84C	101A	101B	136A	136B
	38A-1	46A-1	59A-1	74A-1	74B-1	84A-1	-	84C-1	101A-1	101B-1	136A-1	-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세대, 원)

주택형	약식표기	동/라인	층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5%)		중도금(60%)						잔금(35%)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분양가격 (VAT포함)	1차 (계약시)	2차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1차(10%) 2027-02-01	2차(10%) 2027-07-01	3차(10%) 2028-01-03	4차(10%) 2028-07-03	5차(10%) 2028-11-01	6차(10%) 2029-03-02	입주지정일
38.0314A	38A	101동 1,2,3,4,5,6,7호	5-12	4	77,585,000	185,415,000	-	263,000,000	10,000,000	3,150,000	26,300,000	26,300,000	26,300,000	26,300,000	26,300,000	26,300,000	92,050,000
	38A-1	201동4,5호	13-20	4	79,148,500	189,151,500	-	268,300,000	10,000,000	3,415,000	26,830,000	26,830,000	26,830,000	26,830,000	26,830,000	26,830,000	93,905,000
			21-27	8	79,945,000	191,055,000	-	271,000,000	10,000,000	3,550,000	27,100,000	27,100,000	27,100,000	27,100,000	27,100,000	27,100,000	94,850,000
46.9070A	46A	101동8호	4	1	95,757,000	228,843,000	-	324,600,000	10,000,000	6,230,000	32,460,000	32,460,000	32,460,000	32,460,000	32,460,000	32,460,000	113,610,000
			5-12	3	97,645,000	233,355,000	-	331,000,000	10,000,000	6,550,000	33,100,000	33,100,000	33,100,000	33,100,000	33,100,000	33,100,000	115,850,000
	46A-1	201동3,6,7호	21-27	9	100,270,500	239,629,500	-	339,900,000	10,000,000	6,995,000	33,990,000	33,990,000	33,990,000	33,990,000	33,990,000	33,990,000	118,965,000
59.9783A	59A-1	201동1,2호	2	1	120,596,000	288,204,000	-	408,800,000	10,000,000	10,440,000	40,880,000	40,880,000	40,880,000	40,880,000	40,880,000	40,880,000	143,080,000
			3	2	121,215,500	289,684,500	-	410,900,000	10,000,000	10,545,000	41,090,000	41,090,000	41,090,000	41,090,000	41,090,000	41,090,000	143,815,000
			4	2	123,693,500	295,606,500	-	419,300,000	10,000,000	10,965,000	41,930,000	41,930,000	41,930,000	41,930,000	41,930,000	41,930,000	146,755,000
			13-20	6	127,381,000	304,419,000	-	431,800,000	10,000,000	11,590,000	43,180,000	43,180,000	43,180,000	43,180,000	43,180,000	43,180,000	151,130,000
			21-27	3	128,620,000	307,380,000	-	436,000,000	10,000,000	11,800,000	43,600,000	43,600,000	43,600,000	43,600,000	43,600,000	43,600,000	152,600,000
74.9730A	74A	105동1,2호 106동2,3호	1	1	141,364,000	337,836,000	-	479,200,000	10,000,000	13,960,000	47,920,000	47,920,000	47,920,000	47,920,000	47,920,000	47,920,000	167,720,000
			2	4	146,703,500	350,596,500	-	497,300,000	10,000,000	14,865,000	49,730,000	49,730,000	49,730,000	49,730,000	49,730,000	49,730,000	174,055,000
			3	4	147,441,000	352,359,000	-	499,800,000	10,000,000	14,990,000	49,980,000	49,980,000	49,980,000	49,980,000	49,980,000	49,980,000	174,930,000
			4	4	150,509,000	359,691,000	-	510,200,000	10,000,000	15,510,000	51,020,000	51,020,000	51,020,000	51,020,000	51,020,000	51,020,000	178,570,000
			5-12	31	153,547,500	366,952,500	-	520,500,000	10,000,000	16,025,000	52,050,000	52,050,000	52,050,000	52,050,000	52,050,000	52,050,000	182,175,000
			13-20	31	155,052,000	370,548,000	-	525,600,000	10,000,000	16,280,000	52,560,000	52,560,000	52,560,000	52,560,000	52,560,000	52,560,000	183,960,000
			21-27	21	156,586,000	374,214,000	-	530,800,000	10,000,000	16,540,000	53,080,000	53,080,000	53,080,000	53,080,000	53,080,000	53,080,000	185,780,000
	74A-1	204동1,2,3,4호 207동1,2호	1	2	141,364,000	337,836,000	-	479,200,000	10,000,000	13,960,000	47,920,000	47,920,000	47,920,000	47,920,000	47,920,000	47,920,000	167,720,000
			2	4	146,703,500	350,596,500	-	497,300,000	10,000,000	14,865,000	49,730,000	49,730,000	49,730,000	49,730,000	49,730,000	49,730,000	174,055,000
			3	5	147,441,000	352,359,000	-	499,800,000	10,000,000	14,990,000	49,980,000	49,980,000	49,980,000	49,980,000	49,980,000	49,980,000	174,930,000
			4	6	150,509,000	359,691,000	-	510,200,000	10,000,000	15,510,000	51,020,000	51,020,000	51,020,000	51,020,000	51,020,000	51,020,000	178,570,000
			5-12	42	153,547,500	366,952,500	-	520,500,000	10,000,000	16,025,000	52,050,000	52,050,000	52,050,000	52,050,000	52,050,000	52,050,000	182,175,000
			13-20	37	155,052,000	370,548,000	-	525,600,000	10,000,000	16,280,000	52,560,000	52,560,000	52,560,000	52,560,000	52,560,000	52,560,000	183,960,000

			21-27	25	156,586,000	374,214,000	-	530,800,000	10,000,000	16,540,000	53,080,000	53,080,000	53,080,000	53,080,000	53,080,000	53,080,000	185,780,000
74.9705B	74B	106동1,4호	2	2	143,724,000	343,476,000	-	487,200,000	10,000,000	14,360,000	48,720,000	48,720,000	48,720,000	48,720,000	48,720,000	48,720,000	170,520,000
			3	2	144,491,000	345,309,000	-	489,800,000	10,000,000	14,490,000	48,980,000	48,980,000	48,980,000	48,980,000	48,980,000	48,980,000	171,430,000
			4	2	147,529,500	352,570,500	-	500,100,000	10,000,000	15,005,000	50,010,000	50,010,000	50,010,000	50,010,000	50,010,000	50,010,000	175,035,000
			5-12	16	150,597,500	359,902,500	-	510,500,000	10,000,000	15,525,000	51,050,000	51,050,000	51,050,000	51,050,000	51,050,000	51,050,000	178,675,000
			13-20	16	152,131,500	363,568,500	-	515,700,000	10,000,000	15,785,000	51,570,000	51,570,000	51,570,000	51,570,000	51,570,000	51,570,000	180,495,000
			21-27	13	153,636,000	367,164,000	-	520,800,000	10,000,000	16,040,000	52,080,000	52,080,000	52,080,000	52,080,000	52,080,000	52,080,000	182,280,000
	74B-1	204동5호	1	1	138,384,500	330,715,500	-	469,100,000	10,000,000	13,455,000	46,910,000	46,910,000	46,910,000	46,910,000	46,910,000	46,910,000	164,185,000
			2	1	143,724,000	343,476,000	-	487,200,000	10,000,000	14,360,000	48,720,000	48,720,000	48,720,000	48,720,000	48,720,000	48,720,000	170,520,000
			3	1	144,491,000	345,309,000	-	489,800,000	10,000,000	14,490,000	48,980,000	48,980,000	48,980,000	48,980,000	48,980,000	48,980,000	171,430,000
			4	1	147,529,500	352,570,500	-	500,100,000	10,000,000	15,005,000	50,010,000	50,010,000	50,010,000	50,010,000	50,010,000	50,010,000	175,035,000
			5-12	7	150,597,500	359,902,500	-	510,500,000	10,000,000	15,525,000	51,050,000	51,050,000	51,050,000	51,050,000	51,050,000	51,050,000	178,675,000
			13-20	8	152,131,500	363,568,500	-	515,700,000	10,000,000	15,785,000	51,570,000	51,570,000	51,570,000	51,570,000	51,570,000	51,570,000	180,495,000
			21-27	6	153,636,000	367,164,000	-	520,800,000	10,000,000	16,040,000	52,080,000	52,080,000	52,080,000	52,080,000	52,080,000	52,080,000	182,280,000
84.9692A	84A	102동1,3,4,5호 103동3호 104동3호 107동3,4호 108동1,2,3호 109동1,2호 110동2,3,5호	1	6	163,105,500	389,794,500	-	552,900,000	10,000,000	17,645,000	55,290,000	55,290,000	55,290,000	55,290,000	55,290,000	55,290,000	193,515,000
			2	15	169,153,000	404,247,000	-	573,400,000	10,000,000	18,670,000	57,340,000	57,340,000	57,340,000	57,340,000	57,340,000	57,340,000	200,690,000
			3	16	170,038,000	406,362,000	-	576,400,000	10,000,000	18,820,000	57,640,000	57,640,000	57,640,000	57,640,000	57,640,000	57,640,000	201,740,000
			4	16	173,489,500	414,610,500	-	588,100,000	10,000,000	19,405,000	58,810,000	58,810,000	58,810,000	58,810,000	58,810,000	58,810,000	205,835,000
			5-12	95	176,941,000	422,859,000	-	599,800,000	10,000,000	19,990,000	59,980,000	59,980,000	59,980,000	59,980,000	59,980,000	59,980,000	209,930,000
			13-20	22	178,652,000	426,948,000	-	605,600,000	10,000,000	20,280,000	60,560,000	60,560,000	60,560,000	60,560,000	60,560,000	60,560,000	211,960,000
	84A-1	202동1,2,3,5호 203동1,3,4호 205동1,3,4호 206동2,3,4호 207동3,5호 208동1,3,4호 209동1,3,4호 211동3,4호	1	9	163,105,500	389,794,500	-	552,900,000	10,000,000	17,645,000	55,290,000	55,290,000	55,290,000	55,290,000	55,290,000	55,290,000	193,515,000
			2	21	169,153,000	404,247,000	-	573,400,000	10,000,000	18,670,000	57,340,000	57,340,000	57,340,000	57,340,000	57,340,000	57,340,000	200,690,000
			3	21	170,038,000	406,362,000	-	576,400,000	10,000,000	18,820,000	57,640,000	57,640,000	57,640,000	57,640,000	57,640,000	57,640,000	201,740,000
			4	23	173,489,500	414,610,500	-	588,100,000	10,000,000	19,405,000	58,810,000	58,810,000	58,810,000	58,810,000	58,810,000	58,810,000	205,835,000
			5-12	94	176,941,000	422,859,000	-	599,800,000	10,000,000	19,990,000	59,980,000	59,980,000	59,980,000	59,980,000	59,980,000	59,980,000	209,930,000
			13-20	8	178,652,000	426,948,000	-	605,600,000	10,000,000	20,280,000	60,560,000	60,560,000	60,560,000	60,560,000	60,560,000	60,560,000	211,960,000
			21-27	10	180,392,500	431,107,500	-	611,500,000	10,000,000	20,575,000	61,150,000	61,150,000	61,150,000	61,150,000	61,150,000	61,150,000	214,025,000
84.9734B	84B	103동2호 104동1호	1	1	155,996,000	372,804,000	-	528,800,000	10,000,000	16,440,000	52,880,000	52,880,000	52,880,000	52,880,000	52,880,000	52,880,000	185,080,000
			2	1	161,984,500	387,115,500	-	549,100,000	10,000,000	17,455,000	54,910,000	54,910,000	54,910,000	54,910,000	54,910,000	54,910,000	192,185,000
			3	2	162,840,000	389,160,000	-	552,000,000	10,000,000	17,600,000	55,200,000	55,200,000	55,200,000	55,200,000	55,200,000	55,200,000	193,200,000
			4	2	166,262,000	397,338,000	-	563,600,000	10,000,000	18,180,000	56,360,000	56,360,000	56,360,000	56,360,000	56,360,000	56,360,000	197,260,000
			5-12	16	169,684,000	405,516,000	-	575,200,000	10,000,000	18,760,000	57,520,000	57,520,000	57,520,000	57,520,000	57,520,000	57,520,000	201,320,000
			13-20	4	171,395,000	409,605,000	-	581,000,000	10,000,000	19,050,000	58,100,000	58,100,000	58,100,000	58,100,000	58,100,000	58,100,000	203,350,000
84.9704C	84C	102동2호 103동1호 104동2호 108동4호 110동1호	1	1	162,043,500	387,256,500	-	549,300,000	10,000,000	17,465,000	54,930,000	54,930,000	54,930,000	54,930,000	54,930,000	54,930,000	192,255,000
			2	5	168,150,000	401,850,000	-	570,000,000	10,000,000	18,5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199,500,000
			3	5	169,035,000	403,965,000	-	573,000,000	10,000,000	18,650,000	57,300,000	57,300,000	57,300,000	57,300,000	57,300,000	57,300,000	200,550,000
			4	5	172,516,000	412,284,000	-	584,800,000	10,000,000	19,240,000	58,480,000	58,480,000	58,480,000	58,480,000	58,480,000	58,480,000	204,680,000
			5-12	40	175,997,000	420,603,000	-	596,600,000	10,000,000	19,830,000	59,660,000	59,660,000	59,660,000	59,660,000	59,660,000	59,660,000	208,810,000

			13-20	32	177,737,500	424,762,500	-	602,500,000	10,000,000	20,125,000	60,250,000	60,250,000	60,250,000	60,250,000	60,250,000	60,250,000	210,875,000
			21-27	11	179,478,000	428,922,000	-	608,400,000	10,000,000	20,420,000	60,840,000	60,840,000	60,840,000	60,840,000	60,840,000	60,840,000	212,940,000
	84C-1	202동4호 203동2호 205동2호 206동1호 207동4호 208동2호 209동2호	1	3	162,043,500	387,256,500	-	549,300,000	10,000,000	17,465,000	54,930,000	54,930,000	54,930,000	54,930,000	54,930,000	54,930,000	192,255,000
			2	6	168,150,000	401,850,000	-	570,000,000	10,000,000	18,5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199,500,000
			3	7	169,035,000	403,965,000	-	573,000,000	10,000,000	18,650,000	57,300,000	57,300,000	57,300,000	57,300,000	57,300,000	57,300,000	200,550,000
			4	7	172,516,000	412,284,000	-	584,800,000	10,000,000	19,240,000	58,480,000	58,480,000	58,480,000	58,480,000	58,480,000	58,480,000	204,680,000
			5-12	56	175,997,000	420,603,000	-	596,600,000	10,000,000	19,830,000	59,660,000	59,660,000	59,660,000	59,660,000	59,660,000	59,660,000	208,810,000
			13-20	56	177,737,500	424,762,500	-	602,500,000	10,000,000	20,125,000	60,250,000	60,250,000	60,250,000	60,250,000	60,250,000	60,250,000	210,875,000
			21-27	34	179,478,000	428,922,000	-	608,400,000	10,000,000	20,420,000	60,840,000	60,840,000	60,840,000	60,840,000	60,840,000	60,840,000	212,940,000
101.9695A	101A	103동4,5호 104동4,5호 110동4호	1	2	192,074,500	417,295,910	41,729,590	651,100,000	10,000,000	22,555,000	65,110,000	65,110,000	65,110,000	65,110,000	65,110,000	65,110,000	227,885,000
			2	5	199,272,500	432,934,090	43,293,410	675,500,000	10,000,000	23,775,000	67,550,000	67,550,000	67,550,000	67,550,000	67,550,000	67,550,000	236,425,000
			3	5	200,305,000	435,177,270	43,517,730	679,000,000	10,000,000	23,950,000	67,900,000	67,900,000	67,900,000	67,900,000	67,900,000	67,900,000	237,650,000
			4	5	204,405,500	444,085,910	44,408,590	692,900,000	10,000,000	24,645,000	69,290,000	69,290,000	69,290,000	69,290,000	69,290,000	69,290,000	242,515,000
			5-12	19	208,535,500	453,058,640	45,305,860	706,900,000	10,000,000	25,345,000	70,690,000	70,690,000	70,690,000	70,690,000	70,690,000	70,690,000	247,415,000
			13-20	3	210,571,000	457,480,910	45,748,090	713,800,000	10,000,000	25,690,000	71,380,000	71,380,000	71,380,000	71,380,000	71,380,000	71,380,000	249,830,000
			21-27	1	212,636,000	461,967,270	46,196,730	720,800,000	10,000,000	26,040,000	72,080,000	72,080,000	72,080,000	72,080,000	72,080,000	72,080,000	252,280,000
	101A-1	210동1,2,3,5호 211동2호	1	1	192,074,500	417,295,910	41,729,590	651,100,000	10,000,000	22,555,000	65,110,000	65,110,000	65,110,000	65,110,000	65,110,000	65,110,000	227,885,000
			2	4	199,272,500	432,934,090	43,293,410	675,500,000	10,000,000	23,775,000	67,550,000	67,550,000	67,550,000	67,550,000	67,550,000	67,550,000	236,425,000
			3	5	200,305,000	435,177,270	43,517,730	679,000,000	10,000,000	23,950,000	67,900,000	67,900,000	67,900,000	67,900,000	67,900,000	67,900,000	237,650,000
			4	4	204,405,500	444,085,910	44,408,590	692,900,000	10,000,000	24,645,000	69,290,000	69,290,000	69,290,000	69,290,000	69,290,000	69,290,000	242,515,000
			5-12	7	208,535,500	453,058,640	45,305,860	706,900,000	10,000,000	25,345,000	70,690,000	70,690,000	70,690,000	70,690,000	70,690,000	70,690,000	247,415,000
			13-20	7	210,571,000	457,480,910	45,748,090	713,800,000	10,000,000	25,690,000	71,380,000	71,380,000	71,380,000	71,380,000	71,380,000	71,380,000	249,830,000
			21-27	8	212,636,000	461,967,270	46,196,730	720,800,000	10,000,000	26,040,000	72,080,000	72,080,000	72,080,000	72,080,000	72,080,000	72,080,000	252,280,000
101.9772B	101B	107동1,2호	2	2	197,030,500	428,063,180	42,806,320	667,900,000	10,000,000	23,395,000	66,790,000	66,790,000	66,790,000	66,790,000	66,790,000	66,790,000	233,765,000
			3	2	198,063,000	430,306,360	43,030,640	671,400,000	10,000,000	23,570,000	67,140,000	67,140,000	67,140,000	67,140,000	67,140,000	67,140,000	234,990,000
			4	2	202,163,500	439,215,000	43,921,500	685,300,000	10,000,000	24,265,000	68,530,000	68,530,000	68,530,000	68,530,000	68,530,000	68,530,000	239,855,000
			5-12	16	206,293,500	448,187,730	44,818,770	699,300,000	10,000,000	24,965,000	69,930,000	69,930,000	69,930,000	69,930,000	69,930,000	69,930,000	244,755,000
			13-20	16	208,329,000	452,610,000	45,261,000	706,200,000	10,000,000	25,310,000	70,620,000	70,620,000	70,620,000	70,620,000	70,620,000	70,620,000	247,170,000
	101B-1	210동4호 211동1호	2	2	197,030,500	428,063,180	42,806,320	667,900,000	10,000,000	23,395,000	66,790,000	66,790,000	66,790,000	66,790,000	66,790,000	66,790,000	233,765,000
			3	2	198,063,000	430,306,360	43,030,640	671,400,000	10,000,000	23,570,000	67,140,000	67,140,000	67,140,000	67,140,000	67,140,000	67,140,000	234,990,000
			4	2	202,163,500	439,215,000	43,921,500	685,300,000	10,000,000	24,265,000	68,530,000	68,530,000	68,530,000	68,530,000	68,530,000	68,530,000	239,855,000
			5-12	16	206,293,500	448,187,730	44,818,770	699,300,000	10,000,000	24,965,000	69,930,000	69,930,000	69,930,000	69,930,000	69,930,000	69,930,000	244,755,000
			13-20	8	208,329,000	452,610,000	45,261,000	706,200,000	10,000,000	25,310,000	70,620,000	70,620,000	70,620,000	70,620,000	70,620,000	70,620,000	247,170,000
			21-27	5	210,394,000	457,096,360	45,709,640	713,200,000	10,000,000	25,660,000	71,320,000	71,320,000	71,320,000	71,320,000	71,320,000	71,320,000	249,620,000
136.5534A	136A	102동3호 110동3호	17	1	443,503,000	963,542,730	96,354,270	1,503,400,000	10,000,000	65,170,000	150,340,000	150,340,000	150,340,000	150,340,000	150,340,000	150,340,000	526,190,000
			23	1	443,503,000	963,542,730	96,354,270	1,503,400,000	10,000,000	65,170,000	150,340,000	150,340,000	150,340,000	150,340,000	150,340,000	150,340,000	526,190,000
	136A-1	205동4호	16	1	443,503,000	963,542,730	96,354,270	1,503,400,000	10,000,000	65,170,000	150,340,000	150,340,000	150,340,000	150,340,000	150,340,000	150,340,000	526,190,000
136.9291B	136B	110동1호	27	1	442,647,500	961,684,090	96,168,410	1,500,500,000	10,000,000	65,025,000	150,050,000	150,050,000	150,050,000	150,050,000	150,050,000	150,050,000	525,175,000

※ 분양금액 및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의 제기는 불가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사업주체 견본주택 분양사무실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이며,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분양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중도금 일정은 사업주체 또는 금융기관 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5 특별공급

■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구 분(주택형)			38.0314A	46.9070A	59.9783A	74.9730A	74.9705B	84.9692A	84.9734B	84.9704C	101.9695A	101.9772B	136.5534A	136.9291B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1	1	1	3	-	4	1	3	-	-	-	-
	장기복무 제대군인		-	-	-	2	1	2	-	2	-	-	-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	-	2	1	2	-	2	-	-	-	-
	장애인	장애인(창원)	-	-	-	4	2	9	1	6	-	-	-	-
		장애인(경상남도)	-	-	-	2	1	3	1	2	-	-	-	-
		장애인(부산)	-	-	-	1	-	2	-	1	-	-	-	-
		장애인(울산)	-	-	-	1	-	1	-	1	-	-	-	-
	중소기업 근로자		1	1	1	7	3	13	2	10	-	-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	1	1	22	8	36	3	27	8	7	-	-
신혼부부 특별공급			2	2	3	34	12	55	5	43	-	-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	7	2	11	1	8	2	2	-	-
생애최초 특별공급			1	1	1	15	7	26	2	22	-	-	-	-
신생아 특별공급			1	1	1	22	8	36	3	27	-	-	-	-
합 계			7	7	8	122	45	200	19	154	10	9	-	-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2025.03.3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조항	특별공급 신청유형	내용	유의사항
제1항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적용횟수 제한 없음
	생애최초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혼인 전 처분완료한 경우에 한함)	
제2항 (혼인특례)	신혼부부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혼인특례는 본인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제3항 (출산특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신생아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 →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 * 기존주택 처분 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각 호)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 -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 이 경우, 신혼부부, 신생아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추첨제 청약신청자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	- 출산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 특별공급 횟수 제한 외 다른 청약 제한사항은 배제할 수 없음 -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외의 세대원이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을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공급기준</td><td>■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처리방법</th></tr>
<tr><td colspan="2">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td><td>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td></tr>
<tr><td rowspan="2">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td><td>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td><td>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td></tr>
<tr><td>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td><td>모두 부적격 처리</td></tr>
</tabl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td></tr>
<tr><td>무주택</td><td>■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1.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td></tr>
</table>

요건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 신생아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울산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창원시 및 경상남도)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5-1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104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추천기관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 장애인 : 경상남도청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부산광역시청 사회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울산광역시청 복지보훈여성국 장애인복지과, 창원시청 복지여성보건국 노인장애인과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부 경남동부보훈지청 복지증진국 ■ 중소기업 근로자 :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정책과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114세대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대상자</td><td>■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창원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 및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td></tr>
<tr><td>당첨자 선정방법</td><td>■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창원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경상남도 및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에 거주자)
■ ②배점
<table>
<tr><th rowspan="2">배점항목</th><th rowspan="2">총배점</th><th colspan="2">배점기준</th><th rowspan="2">비고</th></tr>
<tr><th>기준</th><th>점수</th></tr>
<tr><td>계</td><td>100</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3">미성년 자녀수(1)</td><td rowspan="3">40</td><td>4명 이상</td><td>40</td><td rowspan="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td></tr>
<tr><td>3명</td><td>35</td></tr>
<tr><td>2명</td><td>25</td></tr>
<tr><td rowspan="3">영유아 자녀수(2)</td><td rowspan="3">15</td><td>3명 이상</td><td>15</td><td rowspan="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td></tr>
<tr><td>2명</td><td>10</td></tr>
<tr><td>1명</td><td>5</td></tr>
<tr><td rowspan="2">세대구성(3)</td><td rowspan="2">5</td><td>3세대 이상</td><td>5</td><td>-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td></tr>
<tr><td>한부모 가족</td><td>5</td><td>- 청약신청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td></tr>
<tr><td rowspan="3">무주택기간(4)</td><td rowspan="3">20</td><td>10년 이상</td><td>20</td><td rowspan="3">-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td></tr>
<tr><td>5년 이상 ~ 10년 미만</td><td>15</td></tr>
<tr><td>1년 이상 ~ 5년 미만</td><td>10</td></tr>
</table></td></tr>
</table>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경상남도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

5-3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5% 범위 : 156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창원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 및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우선공급 (5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일반공급 (2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
※ 3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창원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 ②순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 ③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창원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경상남도,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거주자)

비고	■ **자녀기준** - 자녀는「민법」제855조 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07.16.(목)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우선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7,533,763원	~8,802,202원	~9,326,985원	~9,906,263원	~10,485,541원	~11,064,819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9,040,516원	~10,562,642원	~11,192,382원	~11,887,516원	~12,582,649원	~13,277,783원
일반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40% 이하	7,533,764원~ 10,547,268원	8,802,203원~ 12,323,083원	9,326,986원~ 13,057,779원	9,906,264원~ 13,868,768원	10,485,542원~ 14,679,757원	11,064,820원~ 15,490,747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9,040,517원~ 12,054,021원	10,562,643원~ 14,083,523원	11,192,383원~ 14,923,176원	11,887,517원~ 15,850,021원	12,582,650원~ 16,776,866원	13,277,784원~ 17,703,710원
추첨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0,547,269원~	12,323,084원~	13,057,780원~	13,868,769원~	14,679,758원~	15,490,748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5-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33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창원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 및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창원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경상남도 및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거주자) ■ ②가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비고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5-5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7% 범위 : 75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창원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 및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우선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50%)		
2단계	일반공급 (2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창원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경상남도 및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거주자)

비고

■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07.16.(목)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우선공급		130% 이하	~9,793,892원	~11,442,863원	~12,125,081원	~12,878,142원	~13,631,203원	~14,384,265원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	9,793,893원~ 12,054,021원	11,442,864원~ 14,083,523원	12,125,082원~ 14,923,176원	12,878,143원~ 15,850,021원	13,631,204원~ 16,776,866원	14,384,266원~ 17,703,710원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1인 가구	160% 이하	~12,054,021원	~14,083,523원	~14,923,176원	~15,850,021원	~16,776,866원	~17,703,710원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table>
<tr><th>구분</th><th>금액</th><th colspan="2">내용</th></tr>
<tr><td rowspan="2">부동산
(건물+토지)</td><td rowspan="2">3억3,100만원
이하</td><td>건축물</td><td>-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tr><th colspan="2">건축물 종류</th><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tr>
<tr><td rowspan="2">주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
<tr><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
<tr><td colspan="2">주택 외</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
</table></td></tr>
<tr><td>토지</td><td>-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td></tr>
</table>

5-6 신생아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 3)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99세대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대상자</td><td>■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창원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 및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임신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분
■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td></tr>
<tr><td>당첨자
선정방법</td><td>■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 ①소득구분
<table>
<tr><th>단계</th><th>소득구분</th><th>내용</th></tr>
<tr><td>1단계</td><td>우선공급
(50%)</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td></tr>
<tr><td>2단계</td><td>일반공급
(20%)</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td></tr>
<tr><td>3단계</td><td>추첨공급</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tr>
</table>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창원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경상남도 및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거주자)</td></tr>
</table>

비고

■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07.16.(목)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우선공급	130% 이하	~9,793,892원	~11,442,863원	~12,125,081원	~12,878,142원	~13,631,203원	~14,384,265원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	9,793,893원~ 12,054,021원	11,442,864원~ 14,083,523원	12,125,082원~ 14,923,176원	12,878,143원~ 15,850,021원	13,631,204원~ 16,776,866원	14,384,266원~ 17,703,710원
추첨공급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table>
<tr><th>구분</th><th>금액</th><th colspan="2">내용</th></tr>
<tr><td rowspan="2">부동산
(건물+토지)</td><td rowspan="2">3억3,100만원
이하</td><td>건축물</td><td>-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tr><th colspan="2">건축물 종류</th><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tr>
<tr><td rowspan="2">주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
<tr><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
<tr><td colspan="2">주택 외</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
</table></td></tr>
<tr><td>토지</td><td>-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td></tr>
</table>

6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대상자</td><td>■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창원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 및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td></tr>
<tr><td>청약통장
자격요건</td><td>■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table>
<tr><th>구 분</th><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th>그 밖의 광역시(울산광역시)</th><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창원시 및 경상남도)</th></tr>
<tr><td>전용면적 85㎡ 이하</td><td>300만원</td><td>250만원</td><td>200만원</td></tr>
<tr><td>전용면적 102㎡ 이하</td><td>600만원</td><td>400만원</td><td>300만원</td></tr>
<tr><td>전용면적 135㎡ 이하</td><td>1,000만원</td><td>700만원</td><td>400만원</td></tr>
<tr><td>모든면적</td><td>1,500만원</td><td>1,000만원</td><td>500만원</td></tr>
</table>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td></tr>
<tr><td>당첨자
선정방법</td><td>■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창원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경상남도 및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거주자)
■ ②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table>
<tr><th>구분</th><th>가점제</th><th>추첨제</th></tr>
<tr><td>전용면적 60㎡ 이하</td><td>40%</td><td>60%</td></tr>
<tr><td>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td><td>40%</td><td>60%</td></tr>
<tr><td>전용면적 85㎡ 초과</td><td>-</td><td>100%</td></tr>
</table>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table>
<tr><th>가점항목</th><th>가점상한</th><th>가점구분</th><th>점수</th><th>가점구분</th><th>점수</th></tr>
<tr><td rowspan="6">①무주택기간</td><td rowspan="6">32</td><td>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td><td>0</td><td>8년 이상 ~ 9년 미만</td><td>18</td></tr>
<tr><td>1년 미만</td><td>2</td><td>9년 이상 ~ 10년 미만</td><td>20</td></tr>
<tr><td>1년 이상 ~ 2년 미만</td><td>4</td><td>10년 이상 ~ 11년 미만</td><td>22</td></tr>
<tr><td>2년 이상 ~ 3년 미만</td><td>6</td><td>11년 이상 ~ 12년 미만</td><td>24</td></tr>
<tr><td>3년 이상 ~ 4년 미만</td><td>8</td><td>12년 이상 ~ 13년 미만</td><td>26</td></tr>
<tr><td>4년 이상 ~ 5년 미만</td><td>10</td><td>13년 이상 ~ 14년 미만</td><td>28</td></tr>
</table></td></tr>
</table>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본인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 분	내 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제9호 각 목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비고	**■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7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table>
<tr><th colspan="3">필요서류</th></tr>
<tr><td>본인 신청 시</td><td colspan="2">-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td></tr>
<tr><td rowspan="3">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td><td colspan="2">-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td></tr>
<tr><th>인감증명 방식</th><th>본인서명확인 방식</th></tr>
<tr><td>-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d>-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r>
</table>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당첨자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6.08.04.(화) ~ 2026.08.13.(목)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6.08.04.(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구비서류

■ **자격확인 서류 제출 유의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및 제52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청약 내역과 대조,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하며, 기간 내 자격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 진행이 불가합니다.
- 자격검증서류 제출 시 홈페이지(https://cw-thehue.com)안내 예정이며, 자격검증서류 및 제출 일정을 꼭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은 견본주택 방문 접수 예정이나,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당첨자에 한해서 제출서류를 접수하며, 모든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세대주, 해당지역 거주기간,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의 경우도 접수가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해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소명자료 추가제출 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예정이며 미제출 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서류 미제출로 자격 확인이 안될 경우 계약일에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됩니다.(배우자, 직계존·비속도 대리 신청자로 봄)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당첨자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당첨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적격여부를 확인받아 계약체결을 진행하여도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기간 내 제출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견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검증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단,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절차로 계약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신청 내용과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른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할 때까지 계약서 발급이 되지 않으며, 미소명 시에는 부적격자임을 확인하여야 최종 부적격 처리(청약통장 부활)되며, 서류 미제출로 인해 미확인 시 계약 포기로 간주하여 부적격이 아닌 일반 당첨자로 분류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동.호 추첨 및 계약일정은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 특별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서약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개인정보수집안내(신청자용)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발급구분 : 본인발급, 용도 : 아파트 계약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인 신청 불가] ※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의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확인 후 발급 [발급용도(직접작성) : 아파트 계약용]
	○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대조하여 일치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서명으로 대체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		출입국사실증명원(상세)	본인	•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라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조회 기간 : 본인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기관추천특별공급은 제외 • 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전 출입국 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만 30세 이전 혼인하여 무주택 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일반공급 가점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해당) • 만 19세 이전 혼인하여 무주택 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다자녀가구 특별공급 해당) • 주민등록표상 청약 당첨자가 미혼이거나, 배우자가 사망 혹은 이혼한 경우에도 "상세"로 발급(신혼부부 특별공급 해당)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배우자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상기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사항 참고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배우자	•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수 및 부양가족에 포함 시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하는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전부공개 "상세" 로 발급
		○	복무확인서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군복무기간 10년 이상 명시)
		○	서약서(기존주택 처분 관련 등)	본인	• 출산특례 청약신청자 중 기존주택 처분조건 당첨자인 경우 • 기존주택 처분조건으로 청약을 신청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 (별지 제6호서식)
		○	특별공급신청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청약통장 순위 확인서	본인	•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청약Home에서 청약한경우 생략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본인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아래사항 반드시 제출)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는 생업사정 불인정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 공급신청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한 세대원 또는 미성년자녀 중 한명이라도 해외체류 기간이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 단신부임 불인정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배우자 및 세대원	• 배우자 및 세대원이 생업 등으로 해외체류 여부 확인 • 배우자의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 자녀도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제출 필요
		○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여권번호 필수 기재발급)	본인 및 세대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안됨
		○	주민등록표초본 (상세)	직계존속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기관추천 특별공급	○		특별공급 대상 증명서류	본인	• 해당기관 추천서 (기관 추천 명단 확인으로 대체) ※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배점기준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발급)	배우자/ 직계비속	• 배우자 분리세대 또는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과거주소변동사항,세대구성사유 및 일자,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직계존속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재혼가정의 전혼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한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만18세 이상의 자녀를 미혼 자녀로 인정 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만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미혼 확인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성평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상세)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 받은 서류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출산예정일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전부" 표기)
		○	임신증명 출산이행 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견본주택에 비치)
신혼부부 특별공급	○		자격요건확인서	본인	• 혼인 신고일, 자녀수, 월평균 소득 확인(당사 견본주택 비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이력 포함하여 발급 - 조회기간 : 건강보험가입 최초일부터 ~ 입주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전체기간 설정하여 발급 ※ 단, 직계존속은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에만 해당

	○		소득증빙서류(재직증명서 포함)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신혼부부 · 생애최초, 신생아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본인 및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 견본주택에 비치(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 비사업자 확인각서 제출 시 "소득사실 없음" 확인 가능해야 함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 재혼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이전 자녀 출산 시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로 발급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제출 ※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견본주택에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부동산 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본인 및 세대원	• 부동산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재산세 발생 사실이 없음을 증빙하는 서류
		○	소유 부동산 자산증빙서류	본인 및 세대원	• 부동산소유현황 제출 대상자 중 소유 부동산이 있는 경우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신생아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조
생애최초 특별공급	○		자격요건확인서	본인	• 혼인 신고일, 자녀수, 월평균 소득 확인(당사 견본주택 비치)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미혼 자녀가 없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소득세 입증서류 (납부내역증명서 등)	본인	• 청약신청자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 참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 기록대조일 : 건강보험가입 최초일 부터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전체기간 설정하여 발급
	○		소득증빙서류 (재직증명서포함)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 공급신청자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 [신혼부부 · 생애최초, 신생아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 단, 청약신청자의 직계존속(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의 등본상에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되지 않은 경우 가구원수 및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 견본주택에 비치(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 비사업자 확인각서 제출 시 "소득사실 없음" 확인 가능해야 함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제출 ※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견본주택에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만 18세이상 직계비속을 미혼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가구원수에 포함하여 소득산정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1년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부동산 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본인 및 세대원	• 부동산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재산세 발생 사실이 없음을 증빙하는 서류
		○	소유 부동산 자산증빙서류	본인 및 세대원	• 부동산소유현황 제출 대상자 중 소유 부동산이 있는 경우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신생아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가점산정기준표		• 견본주택에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발급)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주민등록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3년 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부양 직계존속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 • 직계존·비속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사항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사항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피부양 직계비속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발급)	피부양 직계비속	•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부양 직계비속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만18세 이상의 미혼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본인 및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자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자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신생아 특별공급	○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배우자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등표등본으로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재혼한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직계비속	신생아 특별공급인 경우 대상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 기록대조일 : 건강보험가입 최초일 부터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전체기간 설정하여 발급
	○		소득증빙서류 (재직증명서 포함)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 공급신청자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 [신혼부부 · 생애최초, 신생아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 단, 청약신청자의 직계존속(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의 등본상에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되지 않은 경우 가구원수 및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 견본주택에 비치(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 비사업자 확인각서 제출 시 "소득사실 없음" 확인 가능해야 함
		○	부동산 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본인 및 세대원	• 부동산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재산세 발생 사실이 없음을 증빙하는 서류
		○	소유 부동산 자산증빙서류	본인 및 세대원	• 부동산소유현황 제출 대상자 중 소유 부동산이 있는 경우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신생아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조
	○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배우자	임신한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진단서 외 불가] (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배우자	입양한 자녀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제3자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인감증명서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청약자 본인 발급용에 한함/대리인 발급 불가) • 제3자 대리인 신청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
	○		인감도장	청약자	• 인감증명서와 대조, 위임장 날인
	○		신분증 및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 증명서 추가 제출)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부적격 통보를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민원회신,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 등 • "소형 · 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받은자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소명서류	해당주택	•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정 서류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26.07.16.(목)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해당 서류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된 상세로 발급 요망합니다.
※ 특별공급 신청 당일 견본주택 내 접수(현장접수)는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고령자, 장애인 등 해당 특별공급 서류를 완비한 공급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접수가 가능하며, 대리인 접수는 불가하오니 이점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추첨제 포함)	○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개인정보수집안내(신청자용)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 증명서 추가 제출)※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발급구분 : 본인발급, 용도 : 아파트 계약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인 신청 불가] ※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의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확인 후 발급[발급용도(직접작성) : 아파트 계약용
	○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대조하여 일치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서명으로 대체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원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 •비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복무확인서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군복무기간 10년이상 명시)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본인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직인날인)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근로자가 아닌 경우(※아래사항 반드시 제출)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는 생업사정 불인정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여권번호 필수 기재발급)	배우자 및 세대원	• 배우자 및 세대원이 생업 등으로 해외체류 여부 확인 • 배우자의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 자녀도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제출 필요
		○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여권번호 필수 기재발급)	본인 및 세대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안됨
		○	주민등록표초본 (상세)	직계존속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 발급

가점제	○		서약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배우자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	당첨사실 확인서	배우자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피부양 직계존·비속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 • 직계존·비속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사항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사항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비속	• 피부양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3년 이상의 과거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1년 이상)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만18세 이상의 미혼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부양 직계존속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부양 직계비속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배우자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또 손자녀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
제3자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인감증명서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청약자 본인 발급용에 한함/대리인 발급 불가) • 제3자 대리인 신청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
	○		인감도장	청약자	• 인감증명서와 대조, 위임장 날인
	○		대리인신분증 및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 증명서 추가 제출)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민원회신,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 등 • "소형ㆍ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소명서류	해당주택	•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정 서류

※ 인터넷 청약 신청 원칙으로 인터넷으로 신청한 주택공급신청자에 한하여 상기 구비서류는 계약체결 전 제출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상기 서류 외에 사업주체가 당첨자 자격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생애최초, 신생아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자료	발급처
공통서류		①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① 국민건강보헝공단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세무서
근로자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 날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 날인) ③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①,②,③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②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학원강사, 보육교사 등)	① 신규취업자 :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 ② 계속적인 근로자(종합소득세 신고자) : 소득금액증명, 위촉증명서 (종합소득세 미신고자) : 거주자의 사업(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위촉증명서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세무서/홈택스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② 사업자 등록증 사본	①,② 세무서
	법인대표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직인) ② 전년도 재무제표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③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① 세무서 ② 세무서 또는 해당직장 ③ 세무서/등기소
	신규사업자 등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국민연금 가입자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모집공고일 이전 가입한 경우만 인정) ※ 기준소득월액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③ 국민연금 미가입자 : 모집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모집공고일 이전 신고분만 인정) ④ 신규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 이전인 경우 : 모집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모집공고일 이전 신고분만 인정) (신고서 상 금액(매출액-매입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① 세무서 또는 등기소 ② 국민연금공단 ③,④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소득금액증명 또는 간이지급명세서(직인날인) ② 재직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직인 날인)	①,② 해당직장/세무서 ③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공급신청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면 해당 세대 전체가 기준소득 이하인 것으로 간주	①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직인 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 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 날인)	① 세무서 또는 해당직

일용직 근로자	② ①번없는 경우 :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 산정용 가입 내역 확인서)	장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직인 경우) ② 전년도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전년도 소득이 없고, 현재 무직인 경우 반드시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① 견본주택 ② 세무서

※ 상기 모든 제출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26.07.16.(목) 이후 발행분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소득 입증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 및 휴직유형(예시: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 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해당직장, 세무서 등 해당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소득증빙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

구분	확인자격	증빙서류	발급처
자격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직장, 세무서 ② 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과거 1년 이내 및 해당년도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자)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 ①~④ 중 해당서류 ① 소득금액증명(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 (종합소득세 납부자에 한함)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직인날인)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④ 납세증명서(종합소득세 신고자에 한함)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③ 해당직장/세무서 ④ 세무서

※ 상기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는 모집공고일 이전 5개년도 서류(통산 5년의 납부실적)이며,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수 있습니다.
※ 소득증빙서류는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으며, 세무서 또는 해당직장에서 발급받아 '주민등록번호 전체 및 성명'이 정확히 표시 되어야 인정됩니다.
※ 해당직장, 세무서 등 해당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혼부부 · 생애최초, 신생아 특별공급 추첨제 당첨자 자산보유 확인 제출 서류

구분	자산입증 서류		발급처
"부동산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소유증빙	① 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③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①,②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③ 행정복지센터
	자산가액증빙	①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②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상가,오피스텔 등)인 경우) ③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상가,오피스텔 등)인 경우) 주택 외 건축물 중 집합건물 : 위택스(서울 외)의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자료 주택 외 건축물 중 집합건물 외 :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자료, 토지 소유 시 개별 공지지가 확인서	①,② 주민센터 ③ 위택스(www.wetax.go.kr)

		※주택 외 건축물 중 이택스, 위택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재산세 과세내역 제출	
	해당자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 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농지대장 ② 축산업 허가증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① 주민센터 ② 지자체 축산과 ③ 토지이음(www.eum.go.kr)
"부동산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필수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전체 화면 캡쳐)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전국구)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② 행정복지센터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26.07.16.(목)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 전원의 자산입증서류
※ 자산보유기준(3.31억원) 산정 시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보유한 주택 또한 해당 대상입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신생아 특별공급에서 추첨제로 청약하고 자산기준 충족을 입증해야 하는 주택공급신청자는 상기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9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 **계약일정 및 계약장소**

구분	기간	계약장소
당첨자 계약	2026.08.18.(화)~2026.08.20.(목) 3일간/10:00~16:00	장소 : 창원 한신더휴 메가센텀 견본주택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 480-31번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 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은 반드시 계약 체결 전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 (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 계약 시 제출서류는 아래 "계약 체결 시 구비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일반공급) 동·호수 추첨 및 계약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시	○		계약금 납부 영수증	본인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현장수납 불가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 증명서 추가 제출)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발급구분 : 본인발급, 용도 : 아파트 계약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인 신청 불가] ※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의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확인 후 발급[발급용도(직접작성) : 아파트 계약용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대조하여 일치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서명으로 대체

	○		정부수입인지	본인	• 전자수입인지 납부증명서 (수입인지 세액 :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2만원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4만원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는 '전자수입인지(e-revenuestamp.or.kr)' 사이트에서 구매 및 납부증명서 출력 or 우체국 및 시중은행에서 구매
		○	당첨 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본인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본인	
대리인 계약 시 (본인 이외)	○		위임장	계약자	•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인감증명서	계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청약자 본인 발급용에 한함/대리인 발급 불가) • 제3자 대리인 신청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
	○		인감도장	대리인	• 인감증명서와 대조, 위임장 날인
	○		대리인신분증 및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 증명서 추가 제출)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26.07.16.(목)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체결 시 대리인 방문이 불가하며 본인이 방문하여야 합니다.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 인지세 납부 방법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전 별도 안내 예정임.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며, 인지세 납부대상으로 「인지세법」제1조 제2항에 의거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균등 납부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분실했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본인에게 있음.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세액(균등 납부)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사업주체 부담액	1만원	2만원	3만5천원	7만5천원	17만5천원
분양계약자 부담액	1만원	2만원	3만5천원	7만5천원	17만5천원

※ 단, 사업주체는 최초 분양계약에 한하여 인지세의 1/2을(연대 균등 각각 50% 납부) 부담하며, 최초 분양계약 후의 거래(분양권 전매 포함) 등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부동산 등기 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이행 확인과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계약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실제거래가격 (분양대금+프리미엄)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해당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 정부수입인지는 취급금융기관(우체국, 은행) 또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co.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결제원(☎1577-5500)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직접출력 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발행 불가)
※ 인지세 납부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서(소비담당)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여야 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분양대금	**우리은행**	**1005-204-914577**	**회원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상기계좌는 분양대금 관리계좌로서, 상기계좌로 납부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무통장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101동 501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501홍길동'으로 기재)
※ 분양대금은 반드시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 (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은 불가함)
※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 상기 관리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 분양대금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일부 입금 후 계약 미체결 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당첨된 동·호수를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라며 착오납부 및 계좌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하여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분양대금 계약금 납부계좌는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와 상이 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본주택에서 현금수납 불가

■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구분	내 용
당첨자 계약체결 기간 준수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를 제출한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공급대금 납부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계약 체결시 필요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체결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부적격세대 및 미계약세대 발생시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 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의거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주택소유현황, 청약 제한사항 등을 전산검색하며,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등으로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서류를 미제출 또는 제출 하였으나 확인 필요사항 누락, 생략 등 자격확인이 불분명한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부적격 통보 및 소명 안내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의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또는 청약제한사항 등이 있는 경우(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음) 및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확인결과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는 유선 또는 대면, 서면의 방법으로 입주대상자에게 부적격 통보하며, 그 통보일로부터 7일의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계약체결한 경우 계약을 취소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의거 부적격당첨자의 청약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 부적격 당첨자는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당첨사실 삭제 요청서(견본주택 비치)' 작성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아파트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사전 당첨자를 포함)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에 의거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같은 순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예비입주자의 신청 가점점수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의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다음 순위의 예비입주자 동점이거나 더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선정이 취소되며, 동·호수 배정 참여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7조 제 7항에 의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적격 처리합니다. 1.「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에 따른 입주자 자격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2.「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제1순위로 공급 신청할 수 없는 자가 제1순위로 공급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 2의2.「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6항에 따라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가 아닌 자가 가점제를 적용 받아 당첨된 경우 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에서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특별공급을 받은 자가 다른 주택을 한 번 이상 특별공급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1항 각 호의 주택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원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국민주택 또는 규제지역 민영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5.「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부적격 당첨자가 부적격 당첨 제한 기간 중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6.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사람이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사전당첨자 또는 입주예약자로 선정된 경우

	7. 입주예약자가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사전당첨자를 포함한다) 또는 입주예약자로 선정된 경우 8. 사전청약으로 모집된 사전당첨자가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9.「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3 제2항에 따라 당첨된 사람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따른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10.「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3 제3항에 따라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원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의3, 제40조, 제41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특별공급에당첨된 경우
이중 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	• 이중당첨자, 본인 중복신청/당첨자, 부적격 재당첨자 처리 기준 1.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은 불가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2에 따라 부부간 특별공급에 대한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중복당첨될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사람이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사람은 무효 처리합니다. • 부적격 또는 부정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1.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청약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청약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등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 또는 분양일정상 계약한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취소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 세대는 당첨유형별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또한,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관계기관의 전산검색결과 수신현황 및 입주대상자의 자격확인절차 등 분양일정상 계약완료 이후 일정시점(중도금 1회차 납부 전)까지는 사업주체의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자체점검, 재검수 등으로 인하여 부적격사항 확인 시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3. 또한,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의 현장점검으로 불법전매, 부정청약,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 적발시 계약완료 상당시간 이후(입주 전까지)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	• 사업주체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에 통보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제57조 제7항 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8조 제 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봄. 다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같은 순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 이하 이 항에서 같음)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부적격당첨자는 '당첨사실 삭제 및 계좌부활요청서' (계약장소에 비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만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부적격 당첨자명단 통보가 가능함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제출한 청약신청 서류 검토 결과, 가점점수가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한 경우 • 에만 예비입주자 자격이 유지될 수 있으며, 다음 순번 예비입주자 점수보다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기타 계약체결조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규정에 의거 법인외의 자가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을 매수하거나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해당 주택 매매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하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에 준합니다.
유의사항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정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청약자(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 사업주체에서 당첨자에 한하여 세대원, 거주지역, 거주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 받아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와 다르게 당첨되어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확인되는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부적격 당첨자는 소명기간 내에 소명하여 적격으로 판정된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함)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분양계약(전매 포함)에 따른 계약체결 등으로 발생하는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연대하여 균등납부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자가 분담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 분실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 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지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소명기간이 지난 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 제1항부터 제3항 및 제26조의2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도 남은 물량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 제5항에 따라 공급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에 준합니다.

■ 계약자 중도금 대출 안내

- 계약자는 분양대금의 총 5% 완납 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대출취급기관의 중도금 대출을 통해 중도금을 납입할 수 있으나, 중도금 대출 관련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 (중도금 대출의 제한 등), 대출기관의 규제 등으로 인해 대출 알선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계약자는 상기 분양대금(중도금 및 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을 납부일정에 따라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 알선 불가 및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제1·2금융권 및 기타대출방식 포함), 대출금리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사유(보증제한, 신용불량 등)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대출 알선이 불가하거나 개인별 대출축소·대출불가 등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없으며,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이에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하여 지정하는 대출금융기관에서 대출 진행시 본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중도금 무이자" 조건으로 전체 공급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시행할 예정이며, 중도금 대출 이자는 분양계약의 정상적 이행조건하에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할 월상환 대출이자를 중도금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와 시공사가 대납하기로 하며, (단, 사업주체 등이 지정한 중도금 대출기관의 중도금 대출이자만 해당하며, 관련 정책 및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비율을 제한받아 계약자가 자기 책임하에 조달한 중도금에 대한 대출이자는 해당 되지 않습니다.)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중도금 및 잔금의 선납할인율 및 지연이자는 공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적격대출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 보증수수료, 기타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사업주체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대신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증 발급일 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중 빠른날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금융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율에 따른 납부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관련정책·대출상품의 종류 및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 및 관계자는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의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중도금 대출 최초 신청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제시한 중도금 대출금리 등의 조건으로 대출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후 중도금 대출금리 조건(대출금리 인상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 및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10 참고사항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11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유상) 계약

■ 발코니 확장 공사 금액

주택형	발코니 확장비	계약금(10%)	잔금(90%)	비고
		계약시	입주지정일	
46.9070A	11,000,000	1,100,000	9,900,000	
59.9783A	14,100,000	1,410,000	12,690,000	
74.9730A	17,400,000	1,740,000	15,660,000	
74.9705B	17,400,000	1,740,000	15,660,000	
84.9692A	20,000,000	2,000,000	18,000,000	
84.9734B	20,000,000	2,000,000	18,000,000	
84.9704C	20,000,000	2,000,000	18,000,000	
101.9695A	23,600,000	2,360,000	21,240,000	
101.9772B	23,600,000	2,360,000	21,240,000	
136.5534A	32,200,000	3,220,000	28,980,000	
136.9291B	32,200,000	3,220,000	28,980,000	

■ 발코니 확장 유의사항

-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나 비확장형 선택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평면구성 및 제공품목이 변경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외부창호류, 세대내 목창호류, 가구류, 유리, 석재, 타일,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발코니의 면적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산출되는 면적으로 실사용 면적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 확장비용은 분양가와 별도로 시공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하여야하고, 계약체결 이후라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는 발코니 확장을 고려한 설계로 비확장형 선택 시 일부 실의 사용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는 발코니 확장 선택 시 상부세대가 비확장형인 경우 커튼박스의 깊이가 견본주택와 상이하게 설치될 수 있습니다.(단열재 설치로 인하여 커튼박스의 깊이 축소됨).
- 단위세대 빌트인가전 및 일부 마감재가 확장 또는 비확장형 여부에 따라 상이하오니 사전에 확인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가구류는 확장 또는 비확장형 여부에 따라 설치 위치, 수량 및 디자인이 상이하오니 사전에 확인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제공품목, 유상옵션품목, 선택품목, 전시품목 등이 혼합되어 있고, 본 시공 시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설치될 예정입니다. 유상옵션품목(설치사항, 규격), 선택품목, 견본주택의 연출용(전시품목 등) 및 공간 확보(주방, 가전제품 사용공간 등) 부분 등에 대해 계약자는 사전에 견본주택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커튼, 침대, 소파, 책상, 식탁, 전시조명 등), 디스플레이 가전제품(세탁기, TV 등), 기타 전시용품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 시 제공되지 않으며(분양가 미포함),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등 일체)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세대내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고, 계약 및 입주 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유상옵션 품목과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용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제공품목은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견본주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부위 창호 기본 사양은 아래와 같음.

구분			내부창호	외부창호	기타
기본형	전 주택형 (38.0314A 제외)	안방, 침실1,2,3, 거실, 거실2 주방, 드레스룸, 다용도실, 알파공간, 펜트리, 테라스(복도) 거실(측벽)	로이 복층유리 PL이중창 (내부 : 22㎜ 일반 복층유리, 외부 : 22㎜ 로이 복층유리)	창호없음	-
	38.0314A	거실	로이 복층유리 PL이중창 (내부 : 22㎜ 일반 복층유리, 외부 : 22㎜ 로이 복층유리)	로이 복층유리 PL단창 (슬라이딩창-22㎜ 로이 복층유리, 고정창-25.76㎜ 로이 접합유리, 슬라이딩 창호 외측 10.76㎜ 유리난간)	유리난간 창호는 제조사의 제작방식에 따라 두께 및 접합방식이 변경 될 수 있음
		침실1	-	로이 복층유리 PL이중창 (내부 : 22㎜ 일반 복층유리, 외부 : 22㎜ 로이 복층유리)	-
확장형	전 주택형 (136.5534A 상부층 제외)	안방	일반 복층유리 PL이중창 (내부 : 22㎜ 일반 복층유리, 외부 : 22㎜ 일반 복층유리)	로이 복층유리 PL단창 (슬라이딩창-22㎜ 로이 복층유리, 고정창-25.76㎜ 로이 접합유리, 슬라이딩 창호 외측 10.76㎜ 유리난간)	유리난간 창호는 제조사의 제작방식에 따라 두께 및 접합방식이 변경 될 수 있음
		거실	-	로이 복층유리 PL이중창 (내부 : 22㎜ 로이 복층유리, 외부 : 슬라이딩창-22㎜ 일반 복층유리, 고정창-25.76㎜ 접합유리, 슬라이딩 창호 외측 10.76㎜ 유리난간)	유리난간 창호는 제조사의 제작방식에 따라 두께 및 접합방식이 변경 될 수 있음
		침실1,2,3, 주방, 드레스룸, 다용도실, 주방펜트리, 현관펜트리 테라스(복도)	-	로이 복층유리 PL이중창 (내부 : 22㎜ 일반 복층유리, 외부 : 22㎜ 로이 복층유리)	-
		거실(측벽)	-	로이 복층유리 PL이중창 (내부 : 22㎜ 일반 복층유리, 외부 : 22㎜ 로이 복층유리)	-
	136.5534A (상부층)	거실2, 알파공간 드레스룸, 침실3	-	로이 복층유리 PL이중창 (내부 : 22㎜ 일반 복층유리, 외부 : 22㎜ 로이 복층유리)	-
		거실	-	로이 복층유리 PL이중창 (고정창 42.76mm 일면로이삼중유리)	-
		침실2	일반 복층유리 PL이중창 (내부 : 22㎜ 일반 복층유리, 외부 : 22㎜ 일반 복층유리)	로이 복층유리 PL단창 (슬라이딩창-22㎜ 로이 복층유리, 고정창-25.76㎜ 로이 접합유리, 슬라이딩 창호 외측 10.76㎜ 유리난간)	유리난간 창호는 제조사의 제작방식에 따라 두께 및 접합방식이 변경 될 수 있음

- 주방 창호는 철제 난간이 설치 됨.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발코니 마감면 높이가 120CM 이하일 경우 골조 외측에 철제 난간이 설치 됨.
- 발코니 외부샤시는 타입, 창호 위치에 따라 규격이 상이하므로 견본주택 및 비치된 도면을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 외부샤시는 층, 향에 의한 바람의 영향 차이로 유리의 강도 및 두께 또는 재질의 안정성을 위해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풍압테스트 결과 및 안전상 등의 이유로 세대별, 각 실별(실별 내에서도 차등가능), 유리두께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각 세대 발코니에는 전용면적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며, 확장면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 유념하시기 바라며, 세부사항은 견본주택 현장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발코니확장 선택 시 확장부위에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창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함(주기적인 실내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당사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건축법 시행령」및「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본 현장의 대피 시설은"하향식 피난구(실외기실)"로 설치되어 있으므로, 관련 대체시설의 구조변경 및 설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반드시 관리주체의 사전 신고 및 확인 후 설치 하여야 함.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 및 난방부담금 등은 입주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부담 하여야 함.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는 관련 법령에 맞게 시공되어야 하며,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해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시행자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을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고,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발코니에는 각 세대의 가스배관 및 발코니에 필요 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시공되며, 발코니 확장 선택 시 가구를 설치하여 처리하더라도 미관상 조잡할 수 있으며,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의거함.

■ 발코니 확장비 납부계좌

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비	우리은행	1005-804-938397	회원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상기 관리계좌로 납부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비는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상이하므로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발생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계약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어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제출(견본주택 수납 불가)하도록 합니다.
(예시 701동 505호 당첨자 "홍길동"의 경우, 입금자명을 "7010505홍길동"으로 기재)

■ 무상옵션품목(선택품목)

주택형	설치 항목
101.9695A	알파룸형(신발장 2개소 + 알파룸 + 목도어 + ㄱ자형 주방) ※ 기본선택 시 팬트리형(주방팬트리 + 현관팬트리 + 11자형 주방)

■ 무상옵션품목(선택품목) 유의사항
- 알파룸형 무상옵션 선택시 평면 구조 변경으로 인해 주방팬트리 공간이 제공되지 않아 주방팬트리 스타일업 유상옵션이 선택 불가합니다.
- 평면 구조가 변경 됨에 따라 추가 유상옵션 선택시 적용 되는 마감재 및 시공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알파룸형 무상옵션 선택시 내부 벽체는 알파룸 벽지로 변경됩니다.

■ 유상옵션품목(추가 선택품목)

(1) 현관 스타일업 (단위 : 원, VAT 포함)

주택형	설치 항목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지정일
38.0314A, 46.9070A, 59.9783A	3연동 슬라이딩 중문 + 고급형 신발장	1,200,000	120,000	1,080,000
74.9730A, 74.9705B, 84.9692A, 84.9734B, 84.9704C, 101.9695A, 101.9772B, 136.5534A, 136.9291B	3연동 슬라이딩 중문 + 고급형 신발장 + 현관팬트리 가구도어 마감 변경	1,300,000	130,000	1,170,000

- 현관 중문의 제조사 및 제품의 사양(규격, 색상, 프레임, 하드웨어, 손잡이, 유리 사양 등)은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스타일업 유상옵션 선택시 제공되는 고급형 신발장은 도어 마감 변경 및 하부 조명이 적용 됩니다.
- 고급형 신발장에 적용되는 하부조명은 센서 작동 방식이 아닌 가구 내 스위치 작동 방식으로 시공됩니다.
- 59.9783A 현관 스타일업 유상옵션 선택시 도어 마감 변경은 신발장 2개소에 적용되며, 하부조명은 퀵선반이 설치된 신발장 1개소만 적용 됩니다.
- 101.9695A 알파룸형(무상옵션) 선택시 도어 마감 변경은 신발장 2개소에 적용되며, 하부조명은 퀵선반이 설치된 신발장 1개소만 적용 됩니다.

(2) 주방 스타일업 (단위 : 원, VAT 포함)

주택형	구분	설치 항목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지정일
38.0314A	옵션1	주방 상판 엔지니어드스톤	300,000	30,000	270,000
46.9070A			350,000	35,000	315,000
59.9783A, 74.9730A, 74.9705B			600,000	60,000	540,000
84.9692A, 84.9734B, 84.9704C			700,000	70,000	630,000
101.9695A(기본형)			900,000	90,000	810,000
101.9695A(알파룸형)			1,200,000	120,000	1,080,000
101.9772B			1,100,000	110,000	990,000
136.5534A, 136.9291B			900,000	90,000	810,000
38.0314A, 46.9070A	옵션2	주방벽, 상판 세라믹타일 + 리바트 프리미엄 가구 (유리 플랩상부장 및 하부조명 + 하부장 도어 마감 변경 + 사각싱크볼) + 독립형 후드 + 고급주방수전	9,000,000	900,000	8,100,000
59.9783A		주방벽, 상판 세라믹타일 + 리바트 프리미엄 가구 (유리 플랩상부장 및 하부조명 + 하부장 도어 마감 변경 + 사각싱크볼 + 아일랜드상판콘센트) + 독립형 후드 + 고급주방수전	9,000,000	900,000	8,100,000
74.9730A			10,500,000	1,050,000	9,450,000
74.9705B, 84.9692A			12,000,000	1,200,000	10,800,000
84.9734B			13,500,000	1,350,000	12,150,000
84.9704C			12,500,000	1,250,000	11,250,000
101.9695A(기본형)			16,000,000	1,600,000	14,400,000
101.9695A(알파룸형)			18,000,000	1,800,000	16,200,000
136.5534A			15,000,000	1,500,000	13,500,000
136.9291B			12,500,000	1,250,000	11,250,000
101.9772B		주방벽, 상판 세라믹타일 + 리바트 프리미엄 가구 (유리 플랩상부장 및 하부조명 + 하부장 도어 마감 변경 + 사각싱크볼 + 아일랜드상판콘센트) + 독립형 후드 + 고급주방수전 + 주방 추가 수납장	15,000,000	1,500,000	13,500,000

- 주방 스타일업 유상옵션은 중복 선택이 불가 합니다.
- 주방 스타일업 유상옵션 미선택시 주방벽은 도기질 타일, 주방상판은 인조대리석(MMA급)으로 시공 됩니다.
- 주방 스타일업 유상옵션 미선택시 주방 상부장은 일반 여닫이장으로 설치 됩니다.
- 주방 스타일업 유상옵션 미선택시 침니형 렌지후드 및 가구도어가 설치 됩니다.
- 주방 스타일업 1 유상옵션 선택시 주방 벽은 도기질 타일, 주방상판은 엔지니어드스톤으로 시공 됩니다.
- 주방 스타일업 유상옵션 선택시 적용되는 엔지니어드 스톤 및 세라믹타일의 색상 및 패턴, 나누기는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스타일업 2 유상옵션 선택시 제공되는 품목, 마감재의 사양(타일, 가구 등)은 컨셉에 따라 평형별 상이하며, 구성 품목 및 디자인은 변경이 불가합니다.
- 주방 스타일업 2 유상옵션 선택시 제공되는 아일랜드 상판콘센트는 본 공사시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스타일업 2 유상옵션 선택시 84.9692A, 84.9734B, 84.9704C타입을 제외한 나머지 세대는 냉장고장의 마감 컬러가 변경 됩니다.
- 38.0314A, 46.9070A는 아일랜드장 형성이 불가하여 주방 스타일업 2 유상옵션 선택시 아일랜드 상판콘센트가 미제공 됩니다.
- 101.9695A, 101.9772B, 136.5534A, 136.9291B의 주방 스타일업 2 유상옵션 선택시 주방 하부장 및 아일랜드장은 찬넬조명이 설치 됩니다.
- 101.9772B 주방 스타일업 2 선택시 주방 추가 수납장이 제공됩니다.
- 101.9695A 알파룸형 무상옵션 선택 유무에 따라 주방의 구조가 변경되며, 주방 스타일업 유상옵션 선택시 적용되는 마감재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 일부 주택형(46.9070A, 74.9705B, 84.9734B)은 주방 스타일업 2 유상옵션 선택시 유리 플랩상부장 상하부에 가스배관이 노출 되어 시공 됩니다.

(3) 냉장고장 스타일업 (빌트인 냉장고 유상옵션 선택시 선택가능) (단위 : 원, VAT 포함)

주택형	설치 항목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지정일
59.9783A, 74.9730A, 84.9734B, 101.9772B, 136.5534A, 136.9291B	빌트인 냉장고장(인출형 키큰장)	1,800,000	180,000	1,620,000
74.9705B, 84.9692A, 84.9704C, 101.9695A		2,000,000	200,000	1,800,000

- 냉장고장 스타일업(가구 옵션)과 빌트인 냉장고(가전 옵션)은 상호 연동되는 옵션이며, 개별 선택이 불가합니다.
- 84.9692A, 84.9704C, 101.9695A는 냉장고장 스타일업 미선택시 기본 냉장고장(상부장 및 선반형 키큰장)이 제공됩니다.
- 101.9695A는 알파룸형 무상옵션 선택 유무에 따라 주방의 구조가 변경됨에 따라 냉장고장의 규격이 변경됩니다.
- 주방 스타일업2 유상옵션 선택시 냉장고장(기본형 및 빌트인 냉장고)의 가구 마감 컬러가 변경됩니다.

(4) 주방팬트리 스타일업(주방 알파룸 미선택 시 선택 가능) (단위 : 원, VAT 포함)

주택형	설치 항목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지정일
101.9695A	주방팬트리 슬라이딩 도어 + 포스트형 시스템가구	900,000	90,000	810,000

- 알파룸형 무상옵션 미선택시 선택 가능한 유상옵션입니다.
- 주방팬트리 슬라이딩 도어의 제조사 및 제품의 사양(규격, 색상, 프레임, 하드웨어, 손잡이, 유리 사양 등)은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포스트형 시스템 가구의 제조사 및 제품의 사양(규격, 색상, 포스트 형태, 하드웨어 등)은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마감 스타일업 (단위 : 원, VAT 포함)

주택형	설치 항목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지정일
38.0314A	거실, 주방, 복도 벽체 시트판넬	2,200,000	220,000	1,980,000
46.9070A	거실 아트월 세라믹타일 + 거실, 주방, 복도 벽체 시트판넬	4,800,000	480,000	4,320,000
59.9783A		4,800,000	480,000	4,320,000
74.9730A	거실 아트월 및 아트월 연장벽 세라믹타일 + 거실, 주방, 복도 벽체 시트판넬	8,000,000	800,000	7,200,000
74.9705B		8,500,000	850,000	7,650,000
84.9692A, 84.9704C		8,000,000	800,000	7,200,000
84.9734B		9,500,000	950,000	8,550,000
101.9695A	거실 아트월 및 아트월 연장벽 세라믹타일 + 거실, 주방, 복도 벽체 에디톤 및 시트판넬 + 가구판넬	10,000,000	1,000,000	9,000,000
101.9772B		9,500,000	950,000	8,550,000
136.5534A		13,500,000	1,350,000	12,150,000
136.9291B	거실 아트월 세라믹타일 + 거실, 주방, 복도 벽체 시트판넬	8,500,000	850,000	7,650,000

- 마감 스타일업 유상옵션 선택시 적용되는 세라믹타일 및 기타 마감재의 사양(규격, 색상, 패턴, 나누기 등)은 컨셉에 따라 평형별 상이하며, 구성 품목 및 디자인은 변경이 불가합니다.
- 38.0314A는 아트월 부위 포세린 타일이 시공되지 않으며, 마감 스타일업 유상옵션 선택시 세라믹타일이 적용 되지 않습니다.
- 38.0314A를 제외한 나머지 전세대는 마감 스타일업 유상옵션 미선택시 거실 아트월은 포세린타일로 시공되며, 거실, 주방, 복도 벽체는 벽지로 시공 됩니다.
- 101.9695A, 136.5534A는 마감 스타일업 유상옵션 선택시 복도 면에 시공되는 가구판넬은 주방 스타일업2 유상옵션 선택 유무에 따라 마감 컬러가 변경됩니다.
- 101.9695A 알파룸 무상선택 유무에 따라 마감 스타일업 유상옵션 선택시 제공되는 에디톤 및 시트판넬, 가구판넬의 시공범위가 변경됩니다.

(6) 조명 스타일업 (단위 : 원, VAT 포함)

주택형	설치 항목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지정일
59.9783A	거실 우물천장 상하향등 + 씰링팬 + 아트월 픽쳐레일 조명	2,000,000	200,000	1,800,000
74.9730A	거실 우물천장 상하향등 + 씰링팬 + 아트월 픽쳐레일 조명	2,200,000	220,000	1,980,000
74.9705B	거실 우물천장 상하향등 + 씰링팬 + 아트월 픽쳐레일 조명	2,500,000	250,000	2,250,000
84.9692A	거실 우물천장 상하향등 + 씰링팬 + 아트월 픽쳐레일 조명	2,300,000	230,000	2,070,000
84.9734B	거실 우물천장 상하향등 + 씰링팬 + 아트월 픽쳐레일 조명	2,600,000	260,000	2,340,000
84.9704C	거실 우물천장 상하향등 + 씰링팬 + 아트월 픽쳐레일 조명	2,300,000	230,000	2,070,000
101.9695A	거실 우물천장 상하향등 + 씰링팬 + 아트월 픽쳐레일 조명 + 주방 우물천장 간접조명	2,800,000	280,000	2,520,000
101.9772B	거실 우물천장 상하향등 + 씰링팬 + 아트월 픽쳐레일 조명	2,600,000	260,000	2,340,000
136.5534A	주방 우물천장 간접조명	500,000	50,000	450,000
136.9291B	거실 우물천장 상하향등 + 씰링팬 + 아트월 픽쳐레일 조명 + 주방 우물천장 간접조명	2,800,000	280,000	2,520,000

- 74.9705B, 84.9734B, 101.9772B 조명 스타일업 유상옵션 선택시 거실 우물천장 길이 및 식탁등 위치가 변경됩니다.
- 136.5534A는 복층 구조로 거실 우물천장 상하향등 및 씰링팬, 아트월 픽쳐레일 일체형 조명 적용이 불가합니다.
- 본 공사시 조명 스타일업 유상옵션의 거실 상하향등 및 픽처레일일체형 조명의 제품 규격 및 조명박스 깊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조명 스타일업 유상옵션 선택시 설치되는 씰링팬은 별도 리모콘으로 작동되는 제품입니다.

(7) 바닥 스타일업 (단위 : 원, VAT 포함)

주택형	구 분	설치 항목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지정일
38.0314A	옵션1	광폭 강마루(전실 바닥)	200,000	20,000	180,000
46.9070A			250,000	25,000	225,000
59.9783A			350,000	35,000	315,000
74.9730A, 74.9705B			450,000	45,000	405,000
84.9692A, 84.9734B, 84.9704C			500,000	50,000	450,000
101.9695A, 101.9772B			600,000	60,000	540,000
136.5534A, 136.9291B			850,000	85,000	765,000
38.0314A, 46.9070A	옵션2	거실, 주방, 복도 에디톤 스톤(마루)	1,100,000	110,000	990,000
59.9783A			1,500,000	150,000	1,350,000
74.9730A, 74.9705B, 84.9734B, 84.9704C			1,800,000	180,000	1,620,000
84.9692A, 101.9695A, 101.9772B			2,000,000	200,000	1,800,000
136.5534A, 136.9291B			3,100,000	310,000	2,790,000
38.0314A, 46.9070A	옵션3	거실, 주방, 복도 에디톤 스톤(마루) + 침실 광폭 강마루	1,200,000	120,000	1,080,000
59.9783A			1,600,000	160,000	1,440,000
74.9730A, 74.9705B, 84.9734B, 84.9704C			2,000,000	200,000	1,800,000
84.9692A			2,200,000	220,000	1,980,000
101.9695A, 101.9772B			2,300,000	230,000	2,070,000
136.5534A, 136.9291B			3,400,000	340,000	3,060,000

- 바닥 스타일업 유상옵션 미선택시 전실 바닥은 기본 강마루로 시공되며, 기본 강마루의 제조사 및 사양(규격, 색상, 재질, 패턴, 나누기 등)은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바닥 스타일업 1,3 유상옵션 선택시 적용되는 광폭 강마루의 제조사 및 사양(규격, 색상, 재질, 패턴, 나누기 등)은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바닥 스타일업 2,3 유상옵션 선택시 적용되는 에디톤 스톤(마루)의 사양(규격, 색상, 패턴, 나누기 등)은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바닥 스타일업 2,3 유상옵션 선택시 주방 및 복도 팬트리가 형성되는 타입의 팬트리 바닥은 에디톤 스톤(마루)로 시공 됩니다.

• 101A 알파룸 무상선택 선택시 형성되는 알파룸의 바닥은 바닥 스타일업1,3 선택시 광폭 강마루가 적용됩니다.

(8) 욕실 스타일업 (단위 : 원, VAT 포함)

주택형	설치 항목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지정일
38.0314A, 46.9070A	공용욕실 외산 수전 및 위생도기	3,800,000	380,000	3,420,000
59A.9783, 74.9730A, 74.9705B, 84.9692A, 84.9734B, 84.9704C, 101.9695A, 101.9772B	공용욕실, 부부욕실 외산 수전 및 위생도기	5,500,000	550,000	4,950,000
136.5534A	공용욕실, 부부욕실 외산 수전 및 위생도기(복층 욕실 포함)	6,900,000	690,000	6,210,000
136.9291B	공용욕실, 부부욕실 외산 수전 및 위생도기	6,700,000	670,000	6,030,000

• 욕실 스타일업 유상옵션 미선택시 일반형 수전 및 위생도기가 설치되며, 부부욕실에 일반형 비데일체형 양변기가 기본 제공됩니다.
• 136.5534A는 복층 구조로 욕실 스타일업 유상옵션 선택시 복층 욕실을 포함한 욕실 3개소에 외산 수전 및 위생도기가 설치됩니다.
• 설치되는 제품은 제조사의 생산 중단, 품질 개선, 규격 변경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동등 이상의 품질 및 성능을 갖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드레스룸 스타일업 (단위 : 원, VAT 포함)

주택형	설치 항목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지정일
59.9783A	고급형 화장대 + 드레스룸 유리도어 + 조명형 벽판넬 시스템가구 + 드레스룸 천장형 제습기 (코스텔 CDD-600B)	2,500,000	250,000	2,250,000
74.9730A		3,500,000	350,000	3,150,000
74.9705B		2,800,000	280,000	2,520,000
84.9692A, 84.9734B, 84.9704C, 101.9695A, 136.5534A		4,000,000	400,000	3,600,000
101.9772B	고급형 화장대 + 드레스룸 및 안방팬트리 유리도어 + 조명형 벽판넬 시스템가구 + 드레스룸 천장형 제습기 (코스텔 CDD-600B)	5,500,000	550,000	4,950,000
136.9291B	고급형 화장대 + 드레스룸 유리도어 + 조명형 벽판넬 시스템가구 + 드레스룸 천장형 제습기 (코스텔 CDD-600B)	6,000,000	400,000	3,600,000

• 드레스룸 스타일업 유상옵션 선택시 제공되는 고급형 화장대는 타원형 거울이 설치되고, 화장대 마감이 변경됩니다.
• 고급형 디바이더 액세서리는 기본형 화장대에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드레스룸 스타일업 유상옵션 미선택시 기본형 화장대, 드레스룸 가구도어 및 포스트형 시스템가구가 제공 됩니다.
• 조명형 벽판넬 시스템가구의 제조사 및 제품의 사양(규격, 색상, 포스트 형태, 하드웨어 등)은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드레스룸 천장형 제습기의 설치 위치는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01.9772B 안방팬트리는 수납공간으로 계획되어 있어 포스트형 시스템가구가 제공되며, 드레스룸 스타일업 유상옵션 선택시 조명형 벽판넬 시스템 가구가 적용 되지 않습니다.
• 84.9734B는 기본형 및 고급형 화장대 측면 수납장이 제공 되지 않습니다.
• 드레스룸 스타일업 유상옵션 선택시 선반조명 스위치 및 안정기함이 설치되며, 설치 제품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 안방 드레스룸장

(단위 : 원, VAT 포함)

주택형	설치 항목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지정일
84.9692A, 84.9734B, 84.9704C	슬라이딩도어 + 조명형 벽판넬 시스템가구	4,000,000	400,000	3,600,000
101.9695A, 136.5534A, 136.9291B		3,700,000	370,000	3,330,000

- 안방 드레스룸장 유상옵션은 84.9692A 주택형 이상 평형에만 선택 가능한 유상옵션입니다.
- 안방 드레스룸장 슬라이딩 도어의 제조사 및 제품의 사양(규격, 색상, 프레임, 하드웨어, 손잡이, 유리 사양 등)은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조명형 벽판넬 시스템가구의 제조사 및 제품의 사양(규격, 색상, 포스트 형태, 하드웨어 등)은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안방 드레스룸장 유상옵션 선택시 선반조명 스위치 및 안정기함이 설치되며, 설치 제품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11) 침실 붙박이장

(단위 : 원, VAT 포함)

주택형	설치 항목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지정일
59.9783A	침실1 추가 붙박이장	1,300,000	130,000	1,170,000
74.9730A		1,500,000	150,000	1,350,000
74.9705B, 84.9692A, 84.9734B, 84.9704C	침실2 추가 붙박이장	1,500,000	150,000	1,350,000
101.9695A, 101.9772B		1,700,000	170,000	1,530,000
136.9291B		2,100,000	170,000	1,530,000

- 침실 붙박이장 유상옵션 선택시 붙박이장의 설치 위치 및 규격은 평형별 상이하며, 임의변경 할 수 없습니다.
- 침실 붙박이장 옵션 선택시 가구의 후면, 바닥, 천정은 별도의 마감재가 시공 되지 않습니다. 미 선택시 벽면은 벽지로 시공됩니다.

(12) 침실2 수납특화

(단위 : 원, VAT 포함)

주택형	설치 항목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지정일
136.5534A	알파공간 포스트형 시스템가구	1,300,000	130,000	1,170,000

- 포스트형 시스템가구의 제조사 및 제품의 사양(규격, 색상, 포스트 형태, 하드웨어 등)은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

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추가 선택품목	**국민은행**	**671001-04-073670**	**한신공영(주)**

※ 상기 관리계좌로 납부되지 아니한 추가 선택품목 금액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및 발코니 확장비 입금계좌와 상이하므로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발생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계약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어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제출(견본주택 수납 불가)하도록 합니다.
(예시 701동 505호 당첨자 "홍길동"의 경우, 입금자명을 "7010505홍길동"으로 기재)

■ **사업주체(조합) 추가선택품목(기타옵션)**

(1)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

(단위 : 원, VAT 포함)

주택형	옵션선택	에어컨 설치 적용실(실내기)	시스템 에어컨 옵션금액	계약금(10%) 계약시	1차중도금(40%) 2027.07.01.	2차중도금(40%) 2028.07.03.	잔금(10%) 입주지정일
38.0314A	옵션1	거실+안방	3,300,000	330,000	1,320,000	1,320,000	330,000
46.9070A	옵션1	거실+안방	3,400,000	340,000	1,360,000	1,360,000	340,000
	옵션2	거실+안방+침실1	4,900,000	490,000	1,960,000	1,960,000	490,000
59.9783A	옵션1	거실+안방	3,650,000	365,000	1,460,000	1,460,000	365,000
	옵션2	거실+안방+침실1+침실2	6,200,000	620,000	2,480,000	2,480,000	620,000
74.9730A	옵션1	거실+안방	3,800,000	380,000	1,520,000	1,520,000	380,000
	옵션2	거실+안방+침실1+침실2	6,900,000	690,000	2,760,000	2,760,000	690,000
74.9705B	옵션1	거실+안방	3,800,000	380,000	1,520,000	1,520,000	380,000
	옵션2	거실+안방+침실1+침실2	6,900,000	690,000	2,760,000	2,760,000	690,000
84.9692A	옵션1	거실+안방+주방	5,200,000	520,000	2,080,000	2,080,000	520,000
	옵션2	거실+안방+주방+침실1+침실2	7,900,000	790,000	3,160,000	3,160,000	790,000
84.9734B	옵션1	거실+안방+주방	5,200,000	520,000	2,080,000	2,080,000	520,000
	옵션2	거실+안방+주방+침실1+침실2	7,900,000	790,000	3,160,000	3,160,000	790,000
84.9704C	옵션1	거실+안방+주방	5,200,000	520,000	2,080,000	2,080,000	520,000
	옵션2	거실+안방+주방+침실1+침실2	7,900,000	790,000	3,160,000	3,160,000	790,000
101.9695A	옵션1	거실+안방+주방	5,300,000	530,000	2,120,000	2,120,000	530,000
	옵션2	거실+안방+주방+침실1+침실2	8,000,000	800,000	3,200,000	3,200,000	800,000
	옵션3	거실+안방+주방+침실1+침실2+알파룸	8,900,000	890,000	3,560,000	3,560,000	890,000
101.9772B	옵션1	거실+안방+주방	5,300,000	530,000	2,120,000	2,120,000	530,000
	옵션2	거실+안방+주방+침실1+침실2	8,000,000	800,000	3,200,000	3,200,000	800,000
136.5534A	옵션1	거실1+안방+주방+침실1	7,000,000	700,000	2,800,000	2,800,000	700,000
	옵션2	거실1+안방+주방+침실1+거실2+침실2+침실3	12,000,000	1,200,000	4,800,000	4,800,000	1,200,000
136.9291B	옵션1	거실+안방+주방	5,500,000	550,000	2,200,000	2,200,000	550,000
	옵션2	거실+안방+주방+침실1+침실2+침실3	11,000,000	1,100,000	4,400,000	4,400,000	1,100,000

- 천정형 시스템에어컨 옵션 미선택 시 매립 냉매배관은 거실(스탠드형), 안방(벽걸이형)에 기본 설치됩니다.
- 천정형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기본 제공되는 매립 냉매배관(거실,안방)은 설치되지 않으며, 상기 시스템에어컨 설치금액은 매립냉매배관(거실,안방) 미시공 등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 품목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2) 프리미엄 전열교환기

(단위 : 원, VAT 포함)

주택형	설치 항목	제조사	품명	공급금액	계약금(10%) 계약시	1차중도금(40%) 2027.07.01.	2차중도금(40%) 2028.07.03.	잔금(10%) 입주지정일
38.0314A, 46.9070A	프리미엄 전열교환기	LG전자	Z-E0100R2AR(L2AR)	1,400,000	140,000	560,000	560,000	140,000
59.9783A, 74.9730A, 74.9705B, 84.9692A, 84.9734B, 84.9704C, 101.9695A, 101.9772B			Z-E0150R2AR(L2AR)	1,450,000	145,000	580,000	580,000	145,000
136.5534A			Z-E0150R2AR(L2AR) X 2EA	2,900,000	290,000	1,160,000	1,160,000	290,000
136.9291B			Z-E0200R2AR(L2AR)	1,550,000	155,000	620,000	620,000	155,000

- 프리미엄 전열교환기 미선택 시 기본 제공 전열교환기가 설치됩니다.

• 프리미엄 전열교환기는 실외기실에 설치되며, 설치금액은 기본 제공 전열교환기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 품목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3) 빌트인 냉장고

(단위 : 원, VAT 포함)

주택형	설치 항목	제조사	품명	공급금액	계약금(10%)	1차중도금(40%)	2차중도금(40%)	잔금(10%)
					계약시	2027.07.01.	2028.07.03.	입주지정일
전 주택형 (38.0314A, 46.9070A 제외)	오브제컨버터블 (냉장/냉동/김치냉장고)	LG전자	BC1L2AA(냉장), BC1F2AA(냉동) BC1K2AAC(김치)	5,450,000	545,000	2,180,000	2,180,000	545,000

• 빌트인 냉장고(가전 옵션)과 냉장고장 스타일업(가구 옵션)은 상호 연동되는 옵션이며, 개별 선택이 불가합니다.
• 오브제 컨버터블 도어 색상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색상외 변경 선택이 불가하며 견본주택에 설치된 냉동/냉장/김치냉장고 배열과 제품 도어의 열림 방향 등도 변경 선택이 불가합니다.

(4) 기타 주방가전

(단위 : 원, VAT 포함)

주택형	설치 항목	제조사	품명	공급금액	계약금(10%)	1차중도금(40%)	2차중도금(40%)	잔금(10%)
					계약시	2027.07.01.	2028.07.03.	입주지정일
전 주택형	인덕션 쿡탑	LG전자	BEI3ASB4BI	1,100,000	110,000	440,000	440,000	110,000
	전기 오븐	LG전자	MZ385EBTA	450,000	45,000	180,000	180,000	45,000
전 주택형 (38.0314A, 46.9070A 제외)	식기세척기(14인용)	LG전자	DIE5PT	1,200,000	120,000	480,000	480,000	120,000

• 38.0314A, 46.9070A는 주방의 형태로 인하여 식기세척기 유상옵션 선택이 불가합니다.
• 인덕션 쿡탑 미선택시 가스쿡탑 3구가 설치되며 옵션금액 산정 시 해당하는 비용은 감액하여 반영되었습니다.
• 식기세척기 및 전기오븐 유상옵션 미선택시 해당부위는 수납장으로 설치 됩니다.

(5) 욕실복합환풍기

(단위 : 원, VAT 포함)

주택형	설치 적용실	제조사	품명	공급금액	계약금(10%)	1차중도금(40%)	2차중도금(40%)	잔금(10%)
					계약시	2027.07.01.	2028.07.03.	입주지정일
38.0314A, 46.9070A	공용욕실(1개소)	LG전자	M-X0120BASR	1,150,000	115,000	460,000	460,000	115,000
59.9783A, 74.9730A, 74.9705B, 84.9692A, 84.9734B, 84.9704C, 101.9695A, 101.9772B, 136.5534A, 136.9291B	공용욕실 + 부부욕실(2개소)	LG전자		2,250,000	225,000	900,000	900,000	225,000
136.9291A	공용욕실(1층)+부부욕실+공용욕실(2층) (3개소)	LG전자		3,400,000	340,000	1,360,000	1,360,000	340,000

• 욕실복합환풍기의 제품 및 설치 위치는 본 공사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욕실 점검구의 크기 및 위치는 본공사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욕실복합환풍기 미선택 시 기본 제공 욕실환풍기가 설치됩니다.
• 욕실복합환풍기 설치금액은 기본 제공 욕실환풍기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 품목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욕실복합 환풍기의 리모컨은 1대당 1개가 제공됩니다.

(6) THINQ AI HOME 패키지 (단위 : 원, VAT 포함)

주택형	설치 항목	제조사	품명	공급금액	계약금(10%)	1차중도금(40%)	2차중도금(40%)	잔금(10%)
					계약시	2027.07.01.	2028.07.03.	입주지정일
전 주택형	THINQ AI HOME 패키지	LG전자	THINQ AI HOME 패키지	990,000	99,000	396,000	396,000	99,000

- 천정형 시스템에어컨(관련 배관 일체 포함), 프리미엄전열교환기, 빌트인냉장고, 주방가전(일체), 욕실복합환풍기, THINQ AI HOME 패키지는 사업주체(조합) 또는 사업주체(조합)에서 선정한 업체에서 계약체결 및 시공 예정이며, 향후 하자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체(조합)에 있음을 고지해 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천정형 시스템에어컨(관련 배관 일체 포함), 프리미엄전열교환기, 빌트인냉장고, 주방가전(일체), 욕실복합환풍기, THINQ AI HOME 패키지에 대한 계약일정 및 계약 관련 유의사항은 사업주체(조합)에서 추후 안내 예정입니다.
- 추가선택품목의 선택 및 계약 일정은 추후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사업주체(조합)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

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추가 선택품목	옵션(가전) 대금 수령 계좌(은행, 계좌번호, 예금주)는 추후 옵션(가전)계약 일정 통보 시 안내하는 것으로 한다.		

※ 상기 관리계좌로 납부되지 아니한 추가 선택품목 금액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및 발코니 확장비 입금계좌와 상이하므로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발생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계약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어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제출(견본주택 수납 불가)하도록 합니다.
(예시 701동 505호 당첨자 "홍길동"의 경우, 입금자명을 "7010505홍길동"으로 기재)

12 입주 관련 안내 및 기타사항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주택법」 제48조의2, 동법 시행령 제53조의2 및 3,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및 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7호,「주택법」 제48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 2에 의거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전방문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전방문기간시작일 1개월 전까지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사전점검 진행절차 ① 사전점검 안내문 발송 → ② 입주자 현장 도착 → ③ 접수, 교육 안내 → ④ 입주자점검 및 지적사항 작성 → ⑤ 점검사항 제출 → ⑥ 보수 → ⑦ 보수사항 확인

▣ 입주예정일 : 2029년 08월 예정(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중 천재지변, 폭염, 한파 및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와 관계없는 문화재 출토, 설계도서와 상이한 지질여건, 매립폐기물, 암반발견, 행정명령, 민원, 법원의 공사중지 결정,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및 신설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노동조합의 파업, 태업, 전염병 발생, 사회재난 등과 같은 예기치 못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승인이 지연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이를 계약자에게 통보키로 하며, 이 경우에는 지체상금 지급을 적용하지 않으며 입주지연에 대해 "사업주체"와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될 수 없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하며,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이내에 잔여 중도금 및 잔금, 연체료를 완납하고,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제반서류 및 비용(중도금 대출 상환 영수증 또는 중도금 대출에서 담보대출로 대환되는 은행 확인 서류,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비용, 선수관리비 납부영수증 등)을 사업주체에게 제출 또는 납부 한 후에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합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MDF, 방재실 포함), 경비실, 시니어클럽(경로당), 키즈클럽(보육시설), 북클럽(스터디카페), 독서실, 프라이빗 독서실, 맘스키즈라운지, KIDS STATION(맘스스테이션), 피트니스센터(피트니스, GX룸 포함), 실내골프센터(실내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포함), 수영장, 사우나, 스카이라운지, 다목적실, GREEN CAFE(그린카페) ,카페테리아, 다목적체육관(실내배드민턴장), 키즈체육관, 펫케어센터, 멀티룸, LOUNGE CAFE(라운지카페), 주민운동시설 2개소(실외배드민턴장), 어린이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 내 운동시설 및 집기류, 가구 등은 실제 시공시 수량 및 종류가 변경될 수 있으며, 관리 및 운영은 입주자의 부담으로 진행됨.)
- 주민공동시설은 아파트 이용 시설물로 승인되었고, 아파트 시설물로 사용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실입주 후 사용 및 운영방안은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단에서 협의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관리사무소는 101동~110동 1개소(105동 지하1층), 201동~211동 1개소(206동 지하1층) 각각 별도로 설치되어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단에서 협의, 결정하여 관리주체가 분리운영될 수 있습니다.
- 관리사무소는 101동~110동 1개소(105동 지하1층), 201동~211동 1개소(206동 지하1층) 각각 별도로 설치되어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단에서 협의, 결정하여 커뮤니티 등 부대복리시설의 관리주체가 분리운영될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른 주차장 주차대수

구분	주차대수	비 고
법정대수	1,907대	단지내 상가 30대 포함
설치대수	3,223대(세대당 1.6대)	단지내 상가 37대 포함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9의 2)

주차장 차로의 높이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2.7M(지하 1층, 2층), 2.3M(지하 3층)	2.7M

▣ 공동주택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 및「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하자의 판정은 국토교통부 고시「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 적용됩니다.
- 콘크리트의 폭 0.3mm미만의 미세한 균열은 공사상의 하자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 하자보수 절차는「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하자 판정 기준 도면은 사용검사(사용승인) 도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아파트 입주자의 하자보수 관련 일체의 입주자 피해보상은「공동주택 관리법」 제36조, 제37조, 제38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13 단지여건 및 유의사항

■ **유의사항**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로 인한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 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한신더휴 디자인 및 브랜드 리뉴얼을 진행중이며, 당 현장의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의 입면디자인, 색채, 패턴, 줄눈, 몰딩, 옥상난간, CI,BI 브랜드 로고, 경관조명, 기타 장식물의 디자인 및 형태, 마감사양등이 시공사 디자인 기준으로 변경 시공될 경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동의해야 합니다.
- 카달로그에 표현된 조경 및 부대시설, 커뮤니티시설 사진 및 평면은 이미지로 사용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조경 계획(식재, 시설물, 포장, 부대시설) 및 대지조성 계획(법면 또는 사면, 석축, 옹벽, 배수, 포장)의 위치, 디자인, 색채, 수량, 종류 등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의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창원지역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여건 및 유지관리 안정성 여부에 따라 추후 소나무류는 대체 수종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부 커뮤니티공간(놀이터, 수공간, 휴게공간 등)의 외부커뮤니티 공간은 단지 내 기능 강화 및 공간 연계성 확보를 위해 향후 인허가 승인 과정이나 현장 여건에 따라 시설의 세부위치, 규모, 형태 및 구성이 일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수분양자는 이러한 변경 사항에 대하여 추구 하자를 주장하거나 계약 해제, 손해배상 등 일체의 법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광고 및 홈페이지 VR, 홍보물(카탈로그, 전단, 안내문 등) 등 홍보과정에서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은 추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으며, 홍보물 제작과정에서 오기. 오탈자로 인하여 잘못 기재 될 수 있으니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배포된 홍보물 등은 사전 홍보 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견본주택을 확인하시어 계약 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본 카탈로그, 홍보물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이미지 컷 및 전시모형은 전 세대 발코니확장을 감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본 카탈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과 견본주택 내 전시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 연출한 것으로 식재 및 색상, 시설물 등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입주자의 하자보수 관련 일체의 입주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제38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시공을 위하여 관련법령 내 적합한 세대 내·외부 설계변경 등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의 명칭, 외부색채와 외부상세계획 등은 인허가, 경관/색채심의 및 법규의 변경, 시공사 브랜드 변경, 디자인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붕층 및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위성안테나, 태양광설비, 피뢰침, 환기용 벤틸레이터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장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 전 사업계획승인을 득하여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 설치 대상은 아니나, 시공 시 인허가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이동통신설비가 설치될 수 있음.
- 단지 내 부대시설은 사업주체가 설치해주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의 협의에 의해 커뮤니티 등 부대시설의 관리주체가 분리운영될 수 있고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 단지는 건축법, 주택법 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하였으며, 단지 내·외 인접한 건물들과 건물 입면의 돌출발코니, 입면 장식, 각종 시설물 등으로 인하여 일조권 및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가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상이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시행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에는 자전거 보관소, 쓰레기 보관소, 재활용품보관소, 펌프실, 전기실, 발전기실 급배기구, DRY AREA(채광, 환기, 방습 따위를 위하여 지하에서 지상으로 낸 통풍구), 탑라이트(지하 채광을 위하여 지상으로 낸 천창), 외부 엘리베이터 또는 계단실, 미술장식품 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계약 시 위치를 확인해야하며 설치결과에 따라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단, 위치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인허가 진행 및 본 공사 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아파트 및 부대시설의 외관디자인(입면 마감재료 및 색채, 측벽디자인, 옥탑장식물, 몰딩, 창틀 모양 및 색상 등), 필로티, 동 현관, 캐노피, 지하출입구, 난간 디테일, 문주, 천창, DA, 조경패턴 등 외부 시설물 등은 관계기관의 협의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출입구와 인접한 저층 세대는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소음에 의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 및 타사 또는 당사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계약세대가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마감재의 사양은 타입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에서 분양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인지하신 후 분양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인증과 관련하여 인증서 및 관련도면에 첨부된 자재 및 공법은 실 시공 시 현장 여건 및 자재수급 여부에 따라 동급, 동가의 성능 또는 동급, 동가 이상 자재 및 공법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측정결과를 주민 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 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해당 세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향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세대 실외기실에는 화재 시 아랫집으로 대피할 수 있는 하향식피난사다리가 설치되는 공간이므로,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계약자는 계약 시 현재 조건을 확인하여 계약하였으므로 계약조건 보장 및 변경 등의 요구를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상기 기부채납 도로, 공원 등의 기반시설은 사업승인 조건에 따라 공부상 면적, 기부채납면적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실시계획인가 등 인허가청과의 협의에 따라 계획안이 변경 시공 될 수 있습니다.
- 대지면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대지면적	공동주택 부지면적	근린생활시설 부지면적	건폐율	용적률
면적(㎡)	82,859.44	81,732.6988	1,126.7412	21.33%	265.50%

- 현 대지면적은 진입도로 등의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차후 해당도로의 인허가 및 측량후 대지면적의 다소 감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 상기 부지면적은 세대별 계약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의 부지면적은 각각 별도로 분할될 수 없습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의거합니다.
-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본 단지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입니다.

■ 정비구역 여건 및 단지외부여건

- 한신더휴 디자인 및 브랜드 리뉴얼을 진행중이며, 당 현장의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의 입면디자인, 색채, 패턴, 줄눈, 몰딩, 옥상난간, CI,BI 브랜드 로고, 경관조명, 기타 장식물의 디자인 및 형태, 마감사양등이 시공사 디자인 기준으로 변경 시공될 경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동의해야 합니다.
- 당해 정비구역 내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소공원, 어린이공원 등)은 인허가청의 개발계획 및 인허가 조건에 따라 사업주체가 설치하여 인허가청에 귀속하는 시설입니다. 관련 인허가 협의 및 계획 변경 등에 따라 시설의 위치, 규모, 설계 및 설치 시기가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변경 및 지연에 대하여 시행사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당해 정비구역 내 공공청사 부지 및 시설은 인허가청이 직접 설치하는 기부채납 부지입니다. 인허가청의 사업 계획에 따라 규모, 설계, 준공 시기가 변경·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일체 귀책사유가 없고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정비구역 내 설치하는 소공원, 어린이공원, 도로, 공공청사는 기부채납부지로 단지 내 시설물이 아니므로 입주민 전용으로 사용 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정비구역의 토지이용계획은 개발(실시)계획, 정비계획의 변경, 주변사업지 향후계획, 교통영향평가 변경 등으로 준공 시 모형 및 CG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사업시행자는 회원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조합의 사정으로 인하여 혹은 관련 인허가청 협의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분양시 개발계획도면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장은 회원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단지내 조합분양, 일반분양 및 임대(133세대)가 혼합 배치되었으므로 청약 및 계약시 이를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정비구역과 관련한 각종 평가(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내용 중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사항이 변경될 수 있음.
- 당해 정비구역에 설치되는 도로 등의 개설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 기타 외부인 통행 등에 대하여 입주자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정비구역 내 인근 신설·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 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주변에 설치하는 도로는 기부채납부지로 단지 내 도로 등이 아니므로 입주민 전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시공시 현장여건 또는 인허가 결과에 따라 일부 내용(동선, 시설물, 경사도 및 레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의 공원 및 공공공지 등 주변 공공시설 계획은 관련 인허가청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당사는 이와 무관합니다. (CG 및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주변 현황으로 동측으로 12M도로 서측으로 15M도로 남측으로 14M도로, 북측으로 16M도로와 회원초등학교, 20M도로가 인접해 있습니다.
- 사업부지 경계부는 인접대지 등과 바닥레벨에 차이가 있어 옹벽 및 조경석 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벽체의 형태, 미감, 구간, 높이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주변 도로는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도로 폭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과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단지 내 아파트 동별, 향별, 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 일조, 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목적물의 명칭 또는 지번은 계약 체결 이후 상표등록 여부 및 필지의 분할 또는 합필에 의하여 홍보물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 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의 버스정류장은 현재 교통계획에 의해 표현되었으며, 향후 계획의 변경, 취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 내 대중교통(시내버스 등)의 운행시기, 운영, 관리 등은 지자체 및 지자체에서 위탁한 업체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사업주체와 관계가 없으며, 노선결정, 운영시기 차이 등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관련사항은 해당 지자체 및 위탁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람.
- 본 공동주택 사업으로 인하여 유입되는 초등학생은 회원초등학교에 배치할 예정이며, 중학생은 4학교군 내 중학교에 배치가 가능합니다.
- 본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유입학생의 학교 배정은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관할 사항으로 사업추진계획의 변동 및 기관의 정책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주체와는 무관합니다.
- 본 아파트 내에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라 주민공동시설 내 의무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본 시행사는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의를 관할 인허가청과 체결할 예정입니다.
- 본 사업장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2021.01.12.) 이전인 2013년도에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단지로, 해당 규정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허가(사업계획승인)를 득한 배치의 주출입구를 제외한 단지외부로 연결되는 보행 출입구는 현장상황 및 기반시설 조성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용검사 때와 달리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에는 전력 지중화용 지상기기 및 노상시설물(전주, 가로등, 방음벽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홍보 카탈로그,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시설(기반시설, 도로망 등)은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허가관청 및 국시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유해시설 위치는 청약 및 계약 시 견본주택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철탑의 현황, 철탑위치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의 책임이므로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내부여건**

- 단지내부여건을 필히 확인하신 후 청약/계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최고층수는 주동의 최상층 층수로,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와 차이가 있으며, 지상 7~27층 규모입니다.
- 지붕은 평지붕으로, 101동, 104동, 107동, 202동, 203동, 204동, 205동, 206동, 211동 지붕층에 태양광 장비가 설치되며, 태양광 집광판 면적 및 각도, 세부 설치 위치 등은 현장시공 시 결정되므로 분양홍보물의 내용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옥탑부에 장식 구조물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이며,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로 시공됩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합니다.
- 대지경계선은 인허가조건에 의한 기부채납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판상 및 타워형 주동타입으로 단지배치 특성상 동별, 향별, 층별, 위치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일조량, 조망권, 환경권에 차이가 있으며, 일부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내 비치된 설계도서 및 참고도서, 분양홍보물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 미술장식품 설치 위치는 미술장식품 설치관련 인허가에서 결정되며 이는 인허가청에서 주관하는 심의사항으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차량주출입구 인근에 경비실이 설치될 예정이며 위치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상층 주동 진입은 동별 필로티 또는 로비로 진입하는 구조이며, 주동 위치 및 코어별로 진입방식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모델하우스 현장에서 모형도, 도면 등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 지상층 필로티는 102동, 103동 1,2,3호 라인, 104동, 105동, 106동 3,4호 라인, 107동, 108동 3,4호 라인, 109동, 110동에 일부 계획되어있으며, 101동, 103동 4,5호 라인, 106동 1,2호 라인, 108동 1,2호 라인은 필로티가 없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지상층 필로티는 201동, 202동, 203동 3,4호 라인, 204동, 205동, 206동, 207동, 208동 3,4호 라인, 209동 3,4호 라인, 210동, 211동 1,2호 라인에 일부 계획되어있으며, 203동 1,2호 라인, 208동 1,2호 라인, 209동 1,2호 라인, 211동 3,4호 라인은 필로티가 없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지상 1층은 일부 필로티 구조로 각 동 필로티의 층고는 3.5M(108동, 109동 4.0M)입니다.
- 필로티의 천장고는 2.4M로 필로티 천장고 및 통행관련은 주동 위치에 따라 상이하므로 이에 대하여 모델하우스 현장에서 모형도, 도면 등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 필로티의 천장고는 실시설계시 구조검토 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람
- 필로티 위층 세대는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에는 전기실/펌프실, 발전기실/저수조등이 설치되며 발전기의 주기적 가동 및 비상 가동으로 인해 소음 및 진동 등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저층 일부 세대는 단지 내 보도, 근린생활시설, 재활용품창고, 재활용품보관소, 자전기보관소, DA, 탑라이트 등의 설치로 인하여 소음, 분진, 사생활 침해 등의 영향으로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모형도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창호일체형 유리난간 설치로 세대로의 사다리차 접근이 불가하여 입주 및 이사 시 승강기를 활용하여야 하며, 승강기 사용을 위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근린생활시설)의 대지는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아파트의 일부 대지(주출입구 및 차로) 일부는 근린생활시설 계약자, 방문객 및 차량 통행 등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 내 건립되는 보도·조경·주차장 등의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해야 하며, 이 부분에 대하여 점유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 단지내 CCTV, 주차장 카메라의 설치 및 촬영은 입주자의 방범과 편의성을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시스템 설치에 동의한 것으로 보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위배로 보지않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동의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내부에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 전력 및 통신 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시설물 위치는 한국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용부 유의사항**

- 주동의 필로티 공간은 보행통로 또는 공용부분으로 개인이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와 현관문 사이 일부에 설치되는 홀, 복도 등의 공간은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로 구조변경이 금지되며, 공용부위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동별·타입별로 구조 및 면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 각동 지하 피트내부에는 배수를 집수정 및 배수펌프가 설치되며 펌프 가동 시 소음, 진동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주동 세대별 동체감지기는 1,2층, 최상층의 외부 장호 전체, 기준층은 거실에만 설치됩니다.
- 지붕층에 설치되는 태양광설비의 설치 위치, 설치 각도 및 설치 면적, 장비의 구성 등 세부사항은 태양광설비의 전력생산 및 미관 등을 고려하여 설치될 예정으로 실시공시 도면 및 모형(CG)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와 엘리베이터 기계실의 장비로 인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하부 PIT층 제연휀룸에 제연설비를 위한 제연팬 및 외기취입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가동 시 소음·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무인택배시스템이 1개동 당 1개소씩 지하1층 또는 지하2층 동출입구 인근에 설치되며, 세부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주동 출입구의 자동문의 경우 프레임이 있는 자동문 슬라이딩&스윙도어 및 픽스도어이며, 강화유리(안전유리)가 적용됨.
- 각 동 지붕층에 경관조명이 설치되며, 경관조명 작동 및 운영, 유지보수 등 관련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 부담이며, 이를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101동, 201동 최상층 세대의 경우 옥상에 설치되는 무동력 흡출기가 외벽방향으로 설치되어 소음, 냄새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상에 설치되는 제연휀룸 DA의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단실 창호의는 지상에 설치되는 제연휀룸 DA의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공용부 계단실 창호는 실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창호 규격이 확대 되어 변경 될 수 있으며, 시공된 규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 **단지 내 도로, 주차, 외부연결**

- 단지 내 비상차로 및 보도 포장의 패턴 및 색채, 선형 등은 단지 내 환경 개선을 위하여 일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모형 및 CG에 표현된 계획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 내에는 공공장소인 필로티, 기계/전기/발전기실 급배기구, DRY AREA(채광, 환기, 방습 등을 위하여 지하에서 지상으로 낸 통풍구), 탑라이트, 자전거보관소, 재활용품창고, 재활용품보관소 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청약 및 계약 시 위치를 확인하여야 하며 인접한 일부 저층 세대는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 내 비상차로는 볼라드가 설치되어 상시 막혀있는 구조로 이동을 통제하며, 비상시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 단지 관련 비상차로는 비상시에 도로 점용이 필요할 수 있고 도로 점용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지하 3개층이며, 지하1층, 지하2층 주차장 출입 램프의 높이는 2.7m이상이며, 차로폭은 양방향 통행 구간 6.0~7.0m, 일방통행 구간 3.0m 입니다.
- 단지 주출입구는 단지 중앙도로(회원남 14길)에 주차장 주출입구 2개소, 남측에 주차장 부출입구 2개소, 동측에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출입구 1개소가 설치됩니다.
- 단지 내 보행자 출입구는 101동 배면 1개소, 103동과 102동 사이에 1개소, 103동과 104동 사이에 1개소, 104동과 110동 사이에 1개소, 107동과 108동 사이에 1개소가 설치됩니다.
- 단지 내 보행자 출입구는 201동과 202동 사이에 1개소, 202동 남측에 외부계단 및 엘리베이터 1개소, 203동 남측 1개소, 208동 북측 외부계단 1개소, 208동과 209동 외부계단 1개소, 210동과 211동 사이 1개소가 설치 됩니다.
- 단지내외 도로(지상/지하주차장 램프 포함) 및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일부 세대는 차량 소음, 분진 및 불빛 등에 의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 부출입구, 근린생활시설 출입구의 차량 램프 진입로를 바라보는 101동, 107동, 109동, 202동, 205동, 204동, 209동, 210동 일부 세대는 차량 진출입시 불빛 등에 의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비상차로 및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차량의 정차위치로 표기/활용될 수 있습니다.
-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단지모형, 배치CG등에는 비상차량의 정차위치(소방차부서공간)의 표기가 생략된 것으로 실시공시 설치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거실, 안방 창호에 유리난간 설치로 세대로의 사다리차 접근이 불가하여 입주 및 이사 시 승강기를 활용하여야 하며, 승강기 사용을 위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 식재, 포장계획은 각종 인·허가 또는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재료·형태·색채·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외부시설물**

- 각 동의 저층부 세대는 가로등, 보안등 및 기타 유사 시설물로 인한 야간 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의 어린이놀이터, 유아놀이터, 관리사무소(MDF, 방재실 포함), 경비실, 시니어클럽(경로당), 키즈클럽(보육시설), 북클럽(스터디카페), 독서실, 프라이빗 독서실, 맘스키즈라운지, KIDS STATION(맘스스테이션), 피트니스센터(피트니스, GX룸 포함), 실내골프센터(실내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포함), 수영장, 사우나, 스카이라운지, 다목적실, GREEN CAFE(그린카페) ,카페테리아, 다목적체육관(실내배드민턴장), 키즈체육관, 펫케어센터, 멀티룸, LOUNGE CAFE(라운지카페), 웰컴라운지, 재활용품보관소, 자전거보관소, 탑라이트, DA, 근린생활시설 등에 근접하여 배치된 일부 세대는 소음, 냄새, 진동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 내에는 공공장소인 필로티, 어린이놀이터, 쓰레기보관소 및 재활용품보관소, 펌프실, 전기실, 급배기구, DRY AREA(채광, 환기, 방습 등을 위하여 지하에서 지상으로 낸 통풍구), 탑라이트, 제연휀룸, 자전거보관소 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계약 시 위치를 확인하여야 하며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 내 설치되는 외부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는 101동, 110동, 204동, 207동, 210동 주변에 설치될 예정으로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의 상세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주출입구 및 경비실, D.A, 구조물, 저층부 마감, 동별 출입구 디자인 및 장식물, 단지내부 도로 포장재 및 난간대 등 모든 외부 환경 시설물은 세부적인 디자인 작업 진행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실시공시 위치 및 크기, 색상, 재질, 형태 등이 조정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옥외보안등 등 각종 조명 및 기타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에 인접한 107동, 202동, 203동, 208동, 209동은 근린생활시설의 용도에 따라 냄새, 소음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일부 저층 세대는 시각적 간섭으로 인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근린생활시설 인접부에 별도의 재활용품보관소가 설치되며, 근린생활시설에 인접한 세대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모형에 표기된 미술장식품 설치 위치는 관련 인허가 결과에 따라 예정 위치를 표기한 것으로 배치도/시설물설치계획도 등에 표기된 미술장식품 설치 위치와 다를 수 있으며, 관련 심의에서 최종 결정되는 것으로 심의 과정에서 그 위치가 다소 변경될 수 있고, 이는 인허가청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06동 3호 라인, 204동 2호 라인 옥상에 tv공청안테나 설치 예정이며 전파상태에 따라 설치 위치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외관, 조명
• 본 단지의 BI, CI 및 각종 브랜드 로고 표기는 일부 주동 상단부 벽부 또는 최상층 위 파라펫 부위에 설치될 예정이며, 추후 상세설계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건물외관(옥탑, 주동출입구), 아파트의 외부색채/패턴, 줄눈 패턴, 주현관, 필로티(내외부) 등은 분양이후 세부디자인 완료시 확정되며,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주동 주출입구 게이트 디자인은 위치에 따라 석재 돌출치수가 상이할 수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게이트의 위치가 바뀔 수 있습니다.
• 출입구 디자인 벽체 및 데크주차장 출입구에 설치되는 브랜드의 명칭, 로고의 디자인, 규격,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취향 민원에 의하여 변경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옥탑층에는 의장용 구조물, 통신시설, 위성안테나, 피뢰침, 태양광패널 등의 시설물이 다수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 일부 고주파 소음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주동 저층 외벽부 마감은 3개층 석재, 4층 이상은 수성페인트가 기본 마감재입니다. (일부 코어부 외벽은 전체 수성페인트 마감임)
• 석공사에 쓰이는 자재가 천연석재일 경우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VEIN)는 천연석 특성 또는 제품 간 차이로 인하여 색상 및 무늬가 서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분양홍보자료(모형, CG등)에 표현된 옥탑 디자인 구조물의 규격, 기둥의 위치/크기, 간살 등의 규격 등은 이해를 돕기위한 대략적인 표현으로 실시설계 및 구조계산에 따라 세부규격이 결정되므로, 분양 홍보자료와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보안등, 수목 등을 포함하는 일체의 조명 작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비용 일체(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보안등, 수목 등 및 기타 조명에 의하여 야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 근린생활시설
• 근린생활시설은 107동 지상1층, 202동 지하1층, 203동 지하1층, 208동 지상1층, 209동 지하1층, 지하2층 인근에 계획되어 있으며, 인접한 세대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의 용도에 따라 냄새, 소음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일부 저층세대는 시각적 간섭으로 인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107동 지상1층, 202동 지하1층, 203동 지하1층, 208동 지상1층, 209동 지하1층에 근린생활시설의 실외기가 설치 되며, 저층 세대는 근린생활시설의 실외기 장비 설치로 인하여 소음 및 시각적 불편함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시설과 인접한 저층 세대의 경우 계약 전 이를 필히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실외기의 위치는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 및 변경, 시공 등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용 주차 구획은 101동 지하1층 인근에 전용주차구획(주차대수 4대), 202동 지하 1층 인근에 전용주차구획(주차대수15대), 209동 지하2층 인근에 전용주차구획(주차대수 18대) 계획되며, 주차장 입구 및 차로 등을 아파트와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조이며, 별도의 출입구 및 차로를 설치할 수 없는 구조임을 인지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용 주차구획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전면에 레벨 차이로 인해 경사가 일부 발생하며 계약 전 관련 도면, 모형등을 통해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전용 재활용품보관소는 107동 남측, 203동과 208동 사이, 209동 남측, 201동 지하 1층에 설치되며, 인접한 저층 세대는 냄새 및 시각적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전 이를 필히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근린생활시설 외부 대지에 물건의 적치, 시설물 적치, 영업등을 위한 대지의 사용 및 점용은 불가합니다.

- 부대복리시설
• 단지 부대시설의 세부 위치는 견본주택에 확인하시고, 성능개선을 위하여 동일 면적 내에서 해당 용도의 구성 및 실 구획, 실면적 등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은 사업주체가 설치해주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관리사무소가 101동~110동 1개소(105동 지하1층), 201동~211동 1개소(206동 지하1층) 각각 별도로 설치되어 있어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의 협의에 의해 커뮤니티 등 부대시설의 관리주체가 분리운영될 수 있고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실입주 후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됩니다.
• 101동 남측에 키즈클럽(보육시설)이 설치됨.
• 102동 남측에 GREEN CAFE(그린카페)가 설치됨.
• 101동과 105동 사이 지하1층에 수영장, 락커룸, 사우나, 휴게실, 강사실, 창고, 실내골프센터(실내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락커룸 등 포함)가 설치됨.
• 104동 지하1층 인근에 시니어클럽(경로당), 관리사무소(MDF실, 방재실 포함), 용역원휴게실이 설치됨.
• 105동 지하1층 인근에 북클럽(스터디카페), 독서실이 설치됨.
• 106동 지하1층 인근에 카페테리아, 맘스키즈라운지, 사무실, 피트니스센터(피트니스, GX룸, 필라테스, PT룸, 강사실 포함)이 설치되며 내부시설물(운동기구, 도서, 책상 등의 집기·비품류 등)의 제공 및 내부 인테리어는 분양 홍보물에서 표현한 내용과 다르게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음.
• 107동 배면에 경비실, 문주가 설치됨.
• 107동 배면에 KIDS STATION(맘스스테이션)이 설치됨.
• 107동 지상층 인근에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됨.
• 108동과 109동 26층에 스카이라운지, 다목적실이 설치됨.

- 109동 정면에 경비실이 설치됨.
- 110동 남측에 KIDS STATION(맘스스테이션)이 설치됨.
- 201동 정면에 키즈클럽(보육시설)이 설치됨.
- 202동 27층에 스카이라운지, 다목적실이 설치됨.
- 203동 지하1층 인근에 북클럽(스터디카페), 독서실이 설치됨.
- 202동, 203동 지하1층, 208동, 209동 지하2층 인근에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됨.
- 203동과 207동 사이 지하1층에 맘스키즈라운지, 키즈체육관, 락카룸, 사우나, 웰컴라운지가 설치됨.
- 203동과 207동 사이 지하2층에 실내골프센터(실내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포함), 다목적체육관, 탁구장, 휴게라운지, 강사실, 창고, 락커룸이 설치됨.
- 205동 배면에 경비실, 문주가 설치됨.
- 205동 배면에 KIDS STATION(맘스스테이션)이 설치됨.
- 206동 지하1층 인근에 시니어클럽(경로당), 관리사무소(MDF실, 방재실 포함), 용역원휴게실이 설치됨.
- 207동 지하1층에 피트니스센터(피트니스, GX룸, 필라테스, PT룸, 강사실 포함) 코인세탁실, 펫케어센터, 라운지카페, 멀티룸, 창고 등이 설치됨.
- 207동과 210동 사이에 GREEN CAFE(그린카페)가 설치됨.
- 210동 남측에 경비실이 설치됨.
- 210동 정면에 KIDS STATION(맘스스테이션)이 설치됨.
- 키즈클럽(보육시설), 시니어클럽(경로당)은 주방가구를 제외한 내부시설물, 비품, 인테리어 등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부대시설은 성능개선을 위하여 동일 면적 내에서 해당 용도의 구성 ,및 실 구획, 실면적 등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 내 설치되는 각종 가구, 기구, 비품류 등의 종류, 개수, 색채 및 형태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 후 이에 대한 운영 및 관리는 입주자 부담으로 직접 하여야 합니다.
- 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센터, 다목적체육관, 키즈체육관 등 실내주민운동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체육시설업"(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 경영하는 업[業])으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 시니어클럽(경로당) 운영주체는 준공 사용검사 후 해당읍·면(동)사무소에 경로당 등록신고를 별도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 키즈클럽(보육시설) 운영주체는 어린이집 인가신청을 별도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 다목적체육관의 면적은 실시공 과정에서 설계 개선에 따라 확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공용면적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 지하주차장은 지하 3개층이며, 지하 1층, 지하 2층 주차장 출입 램프의 2.7M 이상이며 차로폭은 양방향 통행 구간 6.0~7.0M, 일방통행 구간 3.0M입니다.
- 주차대수는 총 3,223대로 계획되어 있으며, 공동주택 3,186대(지하 1층~지하 3층, 세대당 1.6대), 근린생활시설 주차 37대(지하 1층, 지하 2층)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 지하주차장의 주차구획 위치 및 대수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 A블럭 전기차주차는 지하 1층, 17대 지하2층 42대, 총 59대(급속 6대, 완속 53대)가 각층에 분산 설치되며 개소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B블럭 전기차주차는 지하 1층 42대 지하2층 66대 총 108대(급속 11대, 완속 97대)가 각층에 분산 설치되며 개소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은 105동, 106동, 107동, 108동, 109동, 110동은 지하2층 ~ 지하3층(2개층) 출입이 가능하며, 101동,102동,103동,104동은 지하1층 ~ 지하3층(3개층)에서 출입이 가능합니다.
- 지하 주차장은 202동 1, 2호, 207동, 208동, 210동, 211동은 지하2층 ~ 지하3층(2개층) 출입이 가능하며, 201동, 202동(1,2호 제외), 203동, 204동, 205동, 206동은 지하1층 ~ 지하3층(3개층), 209동은 지하3층(1개층)에서 출입이 가능합니다.
- 지하주차장은 각동 지하층의 계단실, 엘리베이터홀과 직접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입니다.
- 자하주차장 주차 구획 일부 구간은 승하차시 지하주차장 기둥과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이용 시 동별로 주차대수가 일정하게 배정되지 않아 일부세대는 주차구획이 주동 출입구에서 거리가 먼 곳에 계획되어 이동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층 특성상 각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 등에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는 구배가 없으며, 시공 허용오차로 인해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진·출입 경사로는 동절기에 차량의 미끄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되어 설치됩니다.
- 지하 3층에 설치되는 오배수펌프실, 우수저류조, 기계실, 저수조, 펌프실, 발전기실, 전기실의 장비류 가동 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일부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지하층 기계실, 발전기실, 펌프실 등 설비공간 및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하여 지상에 노출된 환기 시설물은 건축물의 특성상 필요한 시설로서 향후 환경개선을 위하여 형태와 위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층 환기를 위해 지하주차장에 팬룸이 설치되며 팬룸 상부(옥외공간)에 환기탑(DA)이 설치되어 환기팬 가동 시 소음·먼지·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용 전용 주차로 및 주차면을 설치할 수 없는 구조임을 인지하고 계약 및 청약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차장 주출입구는 단지 중앙도로(회원남 14길)에 주차장 주출입구 2개소, 남측에 주차장 부출입구 2개소, 동측에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출입구 1개소가 설치됩니다.
- 지하주차장 지하 1층, 지하 2층의 유효높이는 2.7m, 지하3층 유효높이 2.3m로 계획되어있으며, 택배차량 진입시 지하2층에 있는 무인택배함까지 진입이 가능함.
- 지하1층 또는 지하2층 주차장에는 무인택배함이 각 동별 1개소씩 주동출입구 인근에 설치되며, 세부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A블럭 근린생활시설 주차는 아파트와 주차장을 같이 쓰는 구조로 101동 지하1층에 4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 B블럭 근린생활시설 주차는 202동 지하1층에 아파트와 출입구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으며, 15대가 계획되어 있으며, 209동 지하2층 인근에 아파트와 주차장을 같이 쓰는 구조로 18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층과 연결되는 외부계단실 엘리베이터는 101동(지상1층~지하3층), 110동(지하1층~지하3층), 204동(지상1층~지하3층), 207동(지상1층~지하2층), 209동(지하1층~지하3층), 210동(지하1층~지하2층) 주변에 설치될 예정으로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의 상세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조경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분해되는 결속재료가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임.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의 일부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해당 결속재료가 지표면에 노출되지 아니하고 수목이 고사하지 않은 경우는 결속재료 미제거로 인한 시공하자에서 제외되며, 이에 대해 이의 또는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각 동 주변에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피난을 위하여 공기안전매트 설치공간이 조성되는 경우, 해당 자리에는 교목 및 관목 식재가 불가능함.
• 각 동의 일부 세대 전·후면 수목 식재로 인해 일부 조망권이 간섭받을 수 있으며, 수목의 높이는 모형 및 CG와 상이할 수 있음.
• 세부 계획에 따른 단지 내 도로선형, 산책로 등의 동선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녹지, 조경 식재 및 시설, 포장, 조경부대시설, 동선계획 등의 면적, 위치, 규모, 수량, 크기, 색채, 형태 등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대지 경계부에는 레벨차이에 의해 일부 단 차이 및 안전난간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실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에 설치되는 놀이터 내 놀이시설물 및 주민운동시설 중 실외 운동시설은 자재 및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음.
• 카달로그에 표현된 조경 및 부대시설 사진 및 평면은 이미지로 사용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조경 계획(식재, 시설물, 포장, 부대시설) 및 대지조성 계획(법면 또는 사면, 석축, 옹벽, 배수, 포장)의 위치, 디자인, 색채, 수량, 종류 등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의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창원지역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여건 및 유지관리 안정성 여부에 따라 추후 소나무류는 대체 수종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부 커뮤니티공간(놀이터,,수공간, 휴게공간 등)의 외부커뮤니티 공간은 단지 내 기능 강화 및 공간 연계성 확보를 위해 향후 인허가 승인 과정이나 현장 여건에 따라 시설의 세부위치, 규모, 형태 및 구성이 일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수분양자는 이러한 변경 사항에 대하여 추구 하자를 주장하거나 계약 해제, 손해배상 등 일체의 법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개인 부주의로 인한 조경옥외공간에서의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입주민에게 책임이 있음을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함.
• 입주 후 수목 유지관리는 입주자 관리사항이며 관리소홀로 인한 하자발생 책임은 입주민에게 있음을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함.
• 해당 사업지의 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외부시설물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위세대 및 마감재
• 홈페이지, 카탈로그 및 각종인쇄물, 견본주택 등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 및 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카탈로그 및 각종인쇄물, 견본주택 등에 적용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단지 특성상 일반분양 세대의 마감, 가전, 가구 구성등이 조합분양세대와 차이가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가 기존 사용하고 있거나,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동일한 주택형이라도 세대가 속한 동 및 라인에 따라 세대입구 공용부분 및 서비스면적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아파트의 외관의 통일성 및 시각적 안정감 등을 위해 세대별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형 선택 시에는 별도의 추가 공사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 기본형(비확장형), 확장형의 창호 사양은 발코니 "발코니 확장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비확장 세대의 경우, 상부세대가 확장형인 경우 발코니의 천장에 상부세대의 단열재가 설치되어, 기준층보다 천장고가 낮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발코니 외측에 철제 난간이 설치 됨.
• 비확장 세대의 경우, 인접측면세대가 확장형인 경우 인접세대에 면한 발코니 벽부에 측면세대의 단열재가 설치되어, 확장 선택시보다 발코니 실사용면적이 작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 비확장 세대의 경우, 발코니 출입이 불가한 창호가 설치되는 실이 있으므로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며, 기본형(비확장형) 선택 시에는 확장형 세대와 마감재 및 공간구성이 상이하여 다소 협소하며, 제공품목이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됩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견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 내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동질, 동가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됩니다.
• 견본주택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TV, 세탁기 등), 유상옵션 품목, 기타 전시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세내내 설치된 환기설비(환기캡 등)는 설계도면에 의거하여 설치하였으나, 실제 시공 시 위치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세대내 실외기실에 설치된 그릴 및 창호는 본 공사 시 제조사, 업체, 규격, 사양, 하드웨어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세대내 발코니는 실시공시 단열재 설치 등에 따라 크기 및 면적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쿨러 헤드 위치 및 개수는 견본주택 소방 준공용으로 설치된 것으로 실제 세대 내에 설치되는 소화설비 등과는 차이가 있음을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및 도면에 표현된 바닥배수구, 선홈통, 온도조절기, 콘센트, 환기 디퓨져 등의 제품 사양 및 위치는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어려운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 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 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의 전용면적에는 발코니 초과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는 층별, 위치별로 같은 평형대이나 실사용 면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거실 및 침실 등의 천장고는 실 시공 시 바닥재의 종류에 따라 법정 허용한도 내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욕실 문턱높이는 물넘침 등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욕실신발의 높이와 상관없습니다. (문 개폐 시 걸릴 수 있음)
- 생활환경(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 증가 시 결로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관리 및 주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 시 천장틀의 종류 및 규격은 천장구성 및 마감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의 천장고는 2.3M(우물천장 2.42M, 거실 조명 특화 옵션 선택시 우물천장 2.42M)로 전세대 동일합니다.
- 전 주택형은 전실이 제공되지 않으며, 입주 후에도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할 수 없습니다.
- 목창호류, 가구류, 석재류, 타일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대리석 질감 타일 및 인조석류의 자연스러운 패턴은 자재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며 본 공사 시 석재마다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타일 줄눈위치 및 각 액세서리 위치는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모든 창호의 형태 및 재질, 색상, 크기, 창호분할의 위치 및 개폐방향, 위치, 유리사양, 창호 분할 수 등은 현장 여건 및 미관, 내풍압, 에너지효율 등을 고려하여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외부창호 및 계단실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결과에 따라 층별, 세대별로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내부 일반가구, 주방가구 등의 마감재 치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현관 신발장, 주방가구, 붙박이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세대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가구류는 확장 또는 비확장형 여부에 따라 설치 위치, 수량 및 디자인이 상이하오니 사전에 확인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세대의 내부에 설치되는 주방가구(상,하부장), 신발장, 화장대, 붙박이장, 욕실장 등 설치되는 가구의 상하부, 측후면 등 비노출면에는 마루, 타일, 도배지 등의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대내부에 설치된 조명기구, 배선기구 및 전기 마감재 위치는 본 공사 시에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각 타입 침실 및 벽체 2개소에 통신단자함 및 세대분전반이 노출 설치되어 시각적으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타입 안방, 침실 또는 펜트리에 세대분전반 및 통신단자함이 개별로 노출 설치되어 시각적으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에어컨용 냉매배관은 거실과 안방에 매립 설치됩니다.(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 시 제외됨.)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및 실외기실에는 배수구 및 배수용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으며, 발코니에 설치되는 배수구 및 배수용 드레인 및 오수관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우·오수 선홈통의 위치 및 개수는 현장 여건에 따라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에 설치되는 하향식피난구는 화재 시 대피를 위한 공간으로 출입문은 철재문이 설치되며, 입주 후에도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재질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철재문에는 결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하자가 아닙니다.
- 본 공사 시 세대 발코니의 유효길이 및 높이 등은 해당 세대의 층수, 위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품목 및 선택옵션품목에 대한 선택은 확장형 선택시에만 선택 가능합니다.
- 시스템 에어컨공사, 빌트인 냉장고, 빌트인 김치냉장고, 인덕션쿡탑 등 별도 유상옵션 계약품목으로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이며, 공사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 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합니다.(단,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 계약 불가함.)
- 홈페이지, 카탈로그 및 각종 인쇄물, 견본주택 등에 적용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차별화 및 기능개선이 용이한 평면으로 사업승인변경이 될 수 있으며,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 및 높이 등)등의 디자인 변경과 아파트 외벽 문양은 현장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카탈로그 및각종 인쇄물, 견본주택 등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홈페이지, 팜플렛, 카탈로그 등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 등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동급 및 동가 이상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가구는 추후 입찰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며, 주요 입찰 참여업체는 내부 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의 보이지 않는 가구배면(천장, 벽, 바닥 등)마감은 시공되지 않으며, 보이지 않는 곳의 시공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욕실 가구 혹은 거울 뒷면 등 보이지 않는 곳은 마감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본 및 바닥 마감 특화 선택시 거실 및 주방, 침실에 제공되는 기본 강마루 및 광폭 강마루는 스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의 경우 목재의 고유한 특성상 장시간 수분 노출 시 변형 비틀림의 우려가 있습니다.
- 석재 및 인조대리석류 시공부위는 가공으로 인해 무늬와 색상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공극과 스크래치(자연현상)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설치하였으며 위치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안목치수는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디자인 및 다양한 두께로 인해 도면과 다소 다를 수 있으며,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 창호,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 안내책자 등의 기준으로 시공예정이나, 층 및 향에 따라 발생하는 바람의 영향에 대한 안전상의 확보를 위해 견본주택에 제시된 형태와 다소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외부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에 따라 세대별, 층수 별로 창호사양(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변경 및 축소될 수 있으며, 세대에 설치되는 창호 및 문의 형태와 위치는 기능상의 향상을 위해 브랜드, 규격,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 날개벽체 및 분할은 실제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부창호의 디자인, 프레임사이즈, 유리두께, 손잡이, 안전난간 설치여부 등은 안전, 외부입면계획 및 관계법령에 따라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내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어 욕실 출입 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방벽, 욕실 바닥 및 발코니 바닥의 타일 나누기가 본 공사 시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안방 분합문의 세로크기 및 커텐박스 높이는 스프링클러 배관설치에 따라 높이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감재의 사양은 주택형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에서 차이점을 확인하신 후 계약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 시 타일 및 엔지니어드스톤(주방상판 유상옵션) 등의 나누기 및 줄눈 두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타일의 줄눈 나누기, 마감 등을 고려하여 월패드, 통합단자함, 스위치, 콘센트, 보일러, 온도조절기 등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욕실 천장 몰딩은 시공성 개선을 위해 설치 유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통합단자함 설치로 인해 현관팬트리 시스템가구 선반 및 포스트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의 벽체 마감재 종류 및 두께에 따라 내부공간이 협소하거나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의 개별 냉장고 크기에 따라 주방쪽으로 냉장고 일부가 돌출될 수 있습니다.
-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설치되는 가구의 사이즈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가전기기 등 설치공간의 크기는 견본주택과 같으며 그보다 큰 가전기기는 해당공간에 설치될 수 없으며, 추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 시 각종 유리도어 (슬라이딩, 여닫이, 픽스 등 유상옵션)의 각종 디테일(프레임, 레일, 유리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평면타입에 따라 적용품목(가구, 가전, 등기구, 스위치 등)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등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침실, 욕실 등의 벽체 두께 변경에 따라 문틀의 폭(벽체 두께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특성상 세대 내 가구배치, 평면배치, 기타품목 시공위치는 입주자 개인별 변경 요청을 할 수 없으며, 변경 필요시 준공 및 시설물 인수인계후 입주자 개인이 직접 시행하여야 합니다.
- 주방 상부장 뒷면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경우, 해당 상부장의 깊이가 일반 구간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일부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일부 가구 및 선반의 구조는 견본주택 및 각종 홍보물(도면 포함)과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품목(가구, 가전 등)은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유상옵션 품목(조명 스타일업) 적용 시 스프링클러 배관설치에 따라 해당 구간의 커튼박스 높이는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유상옵션품목 등은 필히 계약 시 가구 입면형태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평형별 유,무상옵션 항목 및 확장공사 포함 항목은 평면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코킹 시공부위 및 색상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욕실 천장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건립되지 않은 세대의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는 디자인, 사양, 개수, 설치위치 등이 건립세대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안방 드레스룸 또는 붙박이장 추가선택품목 선택유무에 따라 안방 커텐박스 길이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실외기실 그릴창의 형태 및 하드웨어는 본 공사시 동등수준 제품으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안방 분합문 창호크기가 시공시 마감품질의 향상을 위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안방 분합문 커튼박스의 크기는 시공시 마감품질의 향상을 위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천장 마감은 현재 석고보드 위 도장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실시공 시 콘크리트면에 도장 마감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천장 높이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주방 창호는 마감 품질 향상을 위하여 실시공 시 타입별로 규격이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부 욕실 및 PD(Pipe Duct)의 벽체는 건식벽체(경량벽체) 공법으로 시공되며, 생활소음, 진동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다용도실과 욕실이 접하는 벽체는 건식벽체(경량벽체) 공법으로 적용 됩니다. 해당 벽체는 구조적 특성상 못, 피스 등 철물 고정이 불가능 하므로 입주자가 임의로 타공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여 발생하는 벽체 손상에 대해서는 입주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부의 실을 구분하는 벽체는 전체 건식벽체(경량벽체) 공법으로 적용 됩니다. 해당 벽체는 구조적 특성상 못, 피스 등 철물 고정이 불가능 하므로 입주자가 임의로 타공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여 발생하는 벽체 손상에 대해서는 입주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84C, 84C-1타입의 단위세대 주방 창호는 타 타입 대비 창호 면적이 작게 설계되었으며, 이로 인해 채광 및 환기 효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모델하우스(또는 견본주택) 및 평면도를 통해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38A타입의 단위세대 내 설비 배관 경로 확보를 위한 인방(상부 벽) 설치에 따라 창호 높이가 당초 2,490mm에서 2,370mm로 조정(120mm 축소)되어 시공 될 예정입니다.
- 욕실 벽 마감재는 타일이 아닌 지정 보드 마감으로 시공되며, 파이프 덕트 내 소음이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욕실 벽 지정 보드 마감의 색상, 패턴 및 나누기는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부 비내력벽체는 품질 향상, 구조 안정성 확보 및 시공 여건에 따라 일부 구간이 콘크리트 벽체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59A타입, 74A,B타입, 84A,B,C타입, 101A,B타입(102동, 103동, 106동(1호라인 제외), 107동(1호라인 제외), 108동, 201동, 202동, 203동, 204동, 205동, 206동, 207동, 208동) 1층~6층 침실1과 침실2에 집광채광루버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커튼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해야 합니다.
- 46A타입(101동,201동) 1층~6층 거실에 집광채광루버가 설치되며, 이로인해 커튼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해야 합니다.
- 136A, B타입 테라스에는 환기용 벤틸레이터(오·배수 통기용) 및 우수배관이 설치되며, 이는 설계 및 시공상 필요한 시설로서 입주자는 이를 사유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임의로 훼손, 이전 또는 제거할 수 없습니다
- 집광채광루버는 신재생에너지 의무사용에 따라 설치되는 것으로, 입주자가 임의로 제거할 수 없습니다.
- 집광채광루버(슬릿,모터,수신기 등)은 본공사시 디자인, 형태, 재질, 마감, 개폐방식 등이 결정되며, 작동 소음, 빛 반사로 인한 눈부심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46A타입의 다용도실과 주방이 접하는 벽체 일부에 주방 오픈장이 설치되며, 계약 체결 이전에 평면도, 모형 등을 충분히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136A, 136A-1타입의 거실은 1~2개층 오픈형 구조로 설계 되었으며, 상부층 거실 창호는 고정식 창호로 설치 됩니다. 해당창호는 개폐가 불가능하여 자연환기가 제한적이며, 설치 위치 및 구조적 특성상 청소 및 유지관리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수 있으니 계약 전 평면도 및 모형등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주방배기는 당해층 직배기 방식으로(38A, 46A타입 제외) 인접 세대에 냄새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전열교환기는 실외기실에 필터 교체 및 유지 관리를 위해 장비와 연결 덕트가 노출로 설치됩니다.
- 옵션 냉방기가 아닌 개별 냉방기기 사용 시 실외기 설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인지하고 청약, 계약하여야 합니다.
- 욕실 내 샤워부스 바닥과 욕조 바닥에는 난방배관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주방 렌지후드 상부장은 주방 자동식소화기 설치공간으로 수납공간으로의 사용이 불가합니다. (렌지후드 옵션형 선택 시 상부장 없이 커버만 설치됨)

■ 창호

- 세대의 창호의 형태 및 재질, 색상, 크기, 창호분할의 위치 및 개폐방향, 위치, 유리사양, 창호 분할수 등은 현장 여건 및 미관, 내풍압, 에너지효율 등을 고려하여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침실, 욕실 등의 벽체 두께 변경에 따라 문틀의 폭(벽체 두께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안방 분합문 커텐박스 높이는 스프링클러 배관설치에 따라 높이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세대의 위아래 인접세대의 확장여부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단열재 설치로 인하여 커텐박스의 깊이가 모델하우스와 상이할 수 있고, 이는 공동주택 성능을 위한 것으로 민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 동의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세대 외부창호 및 계단실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결과에 따라 층별, 세대별로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실외기공간

- 본 공사 시 세대 발코니의 유효길이 및 높이 등은 해당 세대의 층수, 위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에 설치되는 대피공간에는 화재 시 인접 세대로의 대피를 위한 하향식 피난시설이 설치된 구조로 비난방 공간이므로 결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하자가 아닙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배수구 및 배수용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으며, 발코니에 설치되는 배수구 및 배수용 드레인 및 오수관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우·오수 선홈통의 위치 및 개수는 현장 여건에 따라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바닥 레벨은 해당 부위의 용도에 따라 동일 발코니 내에서 단 높이가 상이하게 설치될 수 있으며, 이는 기능과 관련된 사항으로 민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확장형 단위세대의 발코니 중 비확장 발코니(안방, 주방)의 외기에 직접 면하는 벽체에는 결로방지를 위하여 결로방지단열재 및 브라켓이 설치 예정으로 견본주택에 반영되어 있는 위치와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인지하고 청약, 계약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하향식 피난시설의 접이식사다리 덮개는 SUS재질 마감입니다.
- 옵션 냉방기기가 아닌 개별 냉방기기 사용시 실외기 설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인지하고 청약, 계약하여야 합니다.
- 각 동 최하층 세대 실외기실에는 하향식 피난시설이 설치되지 않으며, 필로티 상부세대의 경우 비상시 완강기를 이용하여 대피하여야 합니다.

■ 일반 유의사항

- 본 홍보물(모형도, CG, 이미지, 카탈로그, 리플렛 등 일체)의 상업시설(상가)에 표현된 브랜드 명칭, MD 구성, 업종 계획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의로 설정한 가상의 예시일 뿐이며, 간판의 설치 위치, 크기, 수량, 형태 등은 관계 법령(옥외광고물법 등), 관할 지자체 고시·조례, 지구단위계획 및 향후 제정될 관리규약에 따라 변경 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수분양자는 본 계약 체결 이전 본 고지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등을 상대로 향후 어떠한 이의제기, 소송 제기, 계약해제·해지 요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전염병 발생, 문화재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준공인가 이후 아파트 내력벽체 제거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 주택건설지역 인근 기반시설(도로, 녹지, 공원, 학교, 상/하수, 전기/난방, 저류시설 등) 및 각종 개발계획은 사업주체나 시공사가 아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역개발공사(또는 LH공사), 철도청등이 설치하거나 추진하는 사항으로 사업추진 중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입주지연과 생활불편 및 시세 하락 등의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 사업주체나 시공사는 책임이 없으므로 현재 진행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관리사무소는 101동~110동 1개소(105동 지하1층), 201동~211동 1개소(206동 지하1층) 각각 별도로 설치되어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단에서 협의, 결정하여 관리주체가 분리운영될 수 있습니다.
- 관리사무소는 101동~110동 1개소(105동 지하1층), 201동~211동 1개소(206동 지하1층) 각각 별도로 설치되어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단에서 협의, 결정하여 커뮤니티 등 부대복리시설의 관리주체가 분리운영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의 녹지, 근린공원, 공공시설물, 학교 설립 및 완공계획 등은 자치단체 일정에 의하며 이는 시행사 및 시공사와는 무관합니다.
- 본 아파트 입주자의 하자보수 관련 일체의 입주자 피해보상은 주택법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자재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공사 진행 중 아파트 현장 여건에 따라 구조・성능・상품개선, 하자예방, 설계 및 도면 표현의 오류・정정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원활한 업무의 진행을 위해 법적으로 동의서가 징구되어야하는 사항(주택법 시행규칙11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기 계약자에게 별도의 동의 없이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커뮤니티모형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등이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주민공동시설, 부대복리시설, 쓰레기보관소, 외부 계단실 등의 단지 내 부대시설은 사용상의 편리성과 디자인의 개선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다른 용도로의 변경 및 통합, 실내구획, 위치 및

외관과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 본 사업장 준공 시 경계(확정)측량 후 대지면적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계약면적상의 대지지분이 변경될 수 있음. 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로 인한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 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 하여야 함)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배포된 홍보물 등은 사전 홍보 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견본주택을 방문 확인하시어 계약 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카탈로그 및 홍보물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카탈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한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개발계획 예정도 등은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광고 및 홈페이지 VR, 홍보물(카탈로그, 전단, 안내문 등) 등 홍보과정에서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은 추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으며, 홍보물 제작과정에서 오기·오탈자로 인하여 잘못 기재 될 수 있으니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인쇄물(카탈로그, 공급안내, 홈페이지 등)에 사용된 컴퓨터그래픽(조감도, 투시도, 배치도, 단위세대, 기타 조경 컷 등) 및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와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된 상태와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 전 관련 도면을 통해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와 관련된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 및 타사 또는 신탁사, 시공사의 타 현장 아파트 등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변경)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사업장과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용도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경계벽 및 바닥구조는 관련 법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계·시공됩니다. 다만, 공동주택의 특성상 세대 간 생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주택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적법한 시공이 이루어진 경우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본 공동주택은「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개정(2022.08.04.) 이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단지로, 현행「주택법」상 사후확인제도(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설계 및 시공은 당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으며, 입주 시점의 실제 성능은 실험실 수치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능 차이는 법령에 따른 적법한 시공이 이루어진 경우이므로, 이와 관련한 하자보수 청구는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업장은 현행 '사후확인제도(성능검사제도)' 도입 이전에 '사전인정제도'로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단지입니다. 이에 따라 승인 당시 기준에 맞춰 설계 및 시공이 진행되며, 현행 법령 기준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인정서상의 등급과 입주 후 실제 체감하시는 바닥충격음 성능 등급 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수 및 이의 제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세대 층간바닥구조의 재질, 두께, 사양, 제품 등 세부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당해 주택의 입주 후 주차공간을 이용함에 있어 모든 이용자 상호간에 불편을 야기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차문제에 관한 다툼이 발생되어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리사무소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합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시행사, 신탁사 및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 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공개 후 당해 지역 또는 그 외 타 지역의 타사 또는 당사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가전제품, 공용시설, 부대 편의시설, 조경시설 등을 당해 주택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승인도서에 적용된 사항 이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가전제품, 공용시설, 조경시설 등의 추가 또는 교체, 변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아파트와 충분히 비교하신 후 청약(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물건의 계약체결일 이후 현장 여건에 따라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석축 등의 종류·높이·이격거리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도서에 기록된 각종 상세도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46A타입은 세탁기가 설치되는 다용도실이 현관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 136A 복층(2층) 거실창은 픽스창으로 개폐가 불가합니다.

■ 세대/규격
- 분양 시 홍보물에 표시된 평면도(치수, 구획선), 실내투시도(색상, 구획선), 단지배치도, 면적 및 도면내용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 시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제공/전시품목
- 분양 시 홍보물 및 실내투시도에 표시된 가전제품 및 인테리어소품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든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와 스프링클러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입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보조조명, 커튼, 소파, 거실장, 거실 테이블, 침대, 책상, 의자, 식탁세트 등의 이동식 가구, 디스플레이 가전(TV, 세탁기 등), 액자 및 소품은 세대 연출을 위한 것으로 본 공사 시 시공에서 제외됩니다.

■ **동별 유의사항**

• 각동에 인접 설치되는 각종 단지 내 공용시설물이 근접 설치되므로 견본주택에서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101동, 104동, 107동, 202동, 203동, 204동, 205동, 206동, 211동 지붕층에 태양광 장비가 설치되며, 태양광 집광판 면적 및 각도, 세부 설치 위치 등은 현장시공 시 결정되므로 분양홍보물의 내용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101동 배면에 자전거보관소가 설치됨.
• 101동 동측에 어린이공원이 위치해 있어 사생활 침해 및 생활소음이 발생 할 수 있음.
• 101동 좌측면에 쓰레기 분리수거함, 외부계단, DA가 설치되어 있어 사생활 침해 및 생활소음, 냄새, 이동 동선에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101동 정면에 키즈클럽(보육시설)이 설치 됨.
• 101동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에 세대창고가 설치됨.
• 101동 남측으로 지하주차장 출입구가 설치되어 차량 진출입 및 운행으로 인한 소음, 분진, 불빛 등에 의한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시 유의하시기 바람.
• 101동 8호라인(46A타입) 1~6층 거실 창호에 집광채광 시스템이 설치됨.

• 102동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3층에 세대창고가 설치됨.
• 102동 지하1층에 인접하여 골프연습장이 계획 되어 근접하여 배치된 일부 세대는 소음, 진동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므로 계약 시 유의하시기 바람.
• 102동 136A타입 테라스에는 청소, 유지・관리용 고리 및 우수선홈통이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102동 136A테라스 콘크리트 턱 및 난간은 높이·길이·위치·두께·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02동 136A테라스는 각 타입별로 크기・위치・테라스 출입 방법 등이 서로 상이하며, 다소 불합리한 공간이 발생될 수 있음.
• 102동 배면, 우측면에 DA가 설치됨.
• 102동 배면에 탑라이트가 설치됨.
• 102동 정면에 어린이놀이터, GREEN CAFE(그린카페)가 설치됨.
• 102동과 103동 사이에 쓰레기보관소가 설치됨.
• 102동과 103동 사이에 보행자 부출입구(비상차량 출입구)가 설치됨.
• 102동 1~5호라인(84A, 84C타입) 1~6층 침실1,2 창호에 집광채광 시스템이 설치됨.
• 102동 1호라인 측벽에 DA가 설치 됨.

• 103동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에 세대창고가 설치됨.
• 103동 배면에 자전거보관소, DA가 설치됨.
• 103동 배면에 주민운동시설(실외배드민턴장)이 설치됨.
• 103동 정면에 보행자 부출입구(비상차량 출입구)가 설치됨.
• 103동 동남측에 어린이놀이터, GREEN CAFE(그린카페)가 설치됨.
• 103동과 104동 사이에 미술장식품이 설치될 예정임.
• 103동 1~5호라인(84A, 84B, 84C, 101A타입) 1~6층 침실1,2 창호에 집광채광 시스템이 설치됨.

• 104동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에 세대창고가 설치됨.
• 104동 배면, 좌측면에 DA가 설치됨.
• 104동 배면에 쓰레기보관소, 탑라이트가 설치됨.
• 104동과 105동 사이에 쓰레기보관소가 설치됨.
• 104동 배면에 어린이놀이터, GREEN CAFE(그린카페)가 설치됨.
• 104동 정면에 필로티 접근을 위한 램프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사생활 침해 및 생활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동 동선에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104동 필로티에 부대시설 실외기실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의 경우 소음, 진동 등이 발생 할 수 있음.

• 105동 정면에 쓰레기보관소가 설치됨.
• 105동 배면에 DA가 설치됨.
• 105동 지하 1층에 북클럽(스터디카페), 독서실이 설치됨.
• 105동 지하 1층에 인접하여 실내골프센터, 관리사무소가 설치됨.
• 105동 지하 2층에 인접하여 우수저류조, 오배수펌프실, 우수저류조 기계실이 설치됨.
• 105동 지하 2층, 지하 3층에 세대창고가 설치됨.
• 105동 필로티에 부대시설 실외기실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의 경우 소음, 진동 등이 발생 할 수 있음.
• 105동 지하 1층은 지하주차장에서 주동 로비의 진입이 불가함.

• 106동 배면에 탑라이트, DA, 키즈클럽(보육시설), 유아놀이터이 설치됨.
• 106동 정면에 어린이놀이터, 쓰레기보관소가 설치됨.
• 106동 지하 1층에 카페테리아, 피트니스센터(GX실)이 설치됨.
• 106동과 101동 사이 지하 1층에 인접하여 피트니스센터, 수영장, 사우나 등이 계획 되어 근접하여 배치된 일부 세대는 소음, 진동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
• 106동 지하 1층은 전체 부대복리시설로 계획되어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사생활 침해 및 생활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동 동선에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106동 지하 2층, 지하 3층에 세대창고가 설치됨.
• 106동 지하 2층에 공조실(비주거), 오배수 펌프실(비주거)이 설치 되며, 장비의 가동으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106동 2~4호라인(74A, 74B타입) 1~6층 침실1,2 창호에 집광채광 시스템이 설치됨.
• 106동 필로티에 부대시설 실외기실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의 경우 소음, 진동 등이 발생 할 수 있음.
• 106동 지하 1층은 지하주차장에서 주동 로비의 진입이 불가함.
• 106동 3호 라인 옥상에 tv공청안테나 설치 예정이며 전파상태에 따라 설치 위치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107동 정면에 탑라이트, 쓰레기보관소, 어린이놀이터, 자전거보관소 등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사생활 침해 및 생활 소음, 냄새가 발생할 수 있음.
• 107동 정면, 배면에 DA가 설치됨.
• 107동 배면에 지하주차장 출입구가 설치되어 차량 진출입 및 운행으로 인한 소음, 분진, 불빛 등에 의한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107동 1층 1호라인에 근린생활시설이 인접해 있어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의 용도에 따라 냄새, 소음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
• 107동 1층 1호라인에 근린생활시설용 화장실, 실외기실이 설치되어 소음, 진동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107동 1층 1호라인에 근린생활시설용 쓰레기보관소가 설치되어 냄새, 소음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
• 107동 지하 2층, 지하 3층에 세대창고가 설치됨.
• 107동 1호라인 101A타입은 현관팬트리와 엘리베이터 승강로가 연접되어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107동 북서측으로 경비실, 문주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시야 및 조망에 제약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 107동 배면에 KIDS STATION(맘스스테이션)이 설치됨.
• 107동 지하 3층에 저수조, 우수저수조, 기계실, 전기실이 설치 되며, 장비의 가동으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107동과 108동 사이에 보행자 부출입구(비상차량 출입구)가 설치됨.
• 107동 2~4호라인(84A, 101B타입) 1~6층 침실1,2 창호에 집광채광 시스템이 설치됨.

• 108동 정면에 쓰레기보관소가 설치됨.
• 108동 지하 2층에 우수저류조, 우수저류조기계실이 설치 되며, 장비의 가동으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108동 지하 3층에 발전기실이 설치 되며, 장비의 가동으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108동 필로티에 비상차로가 설치되며, 평상시 이용에 제한이 있음.(볼라드설치)
• 108동 우측면, 배면에 DA가 설치됨.
• 108동 배면에 자전거보관소, 쓰레기보관소가 설치됨.
• 108동과 109동 26층에 스카이라운지, 다목적실이 계획 되어 근접하여 배치된 일부 세대는 소음, 진동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
• 108동 1~4호라인(84A, 84C타입) 1~6층 침실1,2 창호에 집광채광 시스템이 설치됨.
• 108동 외벽 일부 마감재는 커튼월룩이 설치되며, 동 위치에 따라 일부동은 빛의 반사로 인한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음.

• 109동 정면에 경비실이 설치됨.
• 109동 지하 2층, 지하 3층에 세대창고가 설치됨.
• 109동 배면에 쓰레기보관소가 설치됨.
• 109동 정면에 지하주차장 램프가 설치되어 차량 진출입 및 운행으로 인한 소음, 분진, 불빛 등에 의한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109동 1호라인 측면 인근에 미술장식품이 설치될 예정임.
• 109동과 108동 26층에 스카이라운지, 다목적실이 계획 되어 근접하여 배치된 일부 세대는 소음, 진동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
• 109동(스카이라운지) 외벽 일부 마감재는 커튼월룩이 설치되며, 동 위치에 따라 일부동은 빛의 반사로 인한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음.

• 110동 배면에 탑라이트, 어린이놀이터가 인접하여 설치됨.
• 110동 좌측면에 외부계단, 쓰레기보관소가 설치됨.
• 110동 정면, 좌측면에 DA가 설치됨.
• 110동 지하 2층, 지하 3층에 세대창고가 설치됨.
• 110동 1,2호 라인 정면에 차량 회차로가 설치되어 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 분진, 불빛 등에 의한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110동 1,2호 라인 정면에 외부 엘리베이터, KIDS STATION(맘스스테이션)이 설치됨.

• 110동 1호라인 84C타입은 다용도실과 엘리베이터 승강로가 연접되어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10동 5호라인 정면부에 미술장식품이 설치될 예정임.

• 201동 204동 사이에 키즈클럽(보육시설)이 설치됨.
• 201동 배면에 쓰레기보관소, 탑라이트가 설치됨.
• 201동 정면에 DA, 탑라이트, 어린이놀이터가 설치됨.
• 201동 서측에 소공원 및 공공청사가 계획됨.
• 201동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에 세대창고가 설치됨.
• 201동과 202동 사이에 보행자 부출입구(비상차량 출입구)가 설치됨.
• 201동 3,6,7호 라인(46-1타입) 1~6층 거실 창호에 집광채광 시스템이 설치됨.
• 201동 1,2호 라인(59A-1타입) 1~6층 침실1,2 창호에 집광채광 시스템이 설치됨.

• 202동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에 세대창고가 설치됨.
• 202동 지하 1층에 근린생활시설용 실외기실, DA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사생활 침해 및 생활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동 동선에 간섭이 있음.
• 202동 정면에 근린생활시설 출입구 및 주차장, 외부 계단 및 엘리베이터가 설치됨.
• 202동 배면에 DA, 쓰레기보관소가 설치됨.
• 202동 남측에 어린이놀이터 및 주민운동시설이 설치됨.
• 202동 2호라인 84A-1타입은 욕실2와 엘리베이터 승강로가 연접되어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02동 27층에 스카이라운지가 계획되어 근접하여 배치된 일부 세대는 소음, 진동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
• 202동 1~5호 라인(84A-1, 84C-1타입) 1~6층 침실1,2 창호에 집광채광 시스템이 설치됨.
• 202동(1,2호 라인) 지하 1층은 지하주차장에서 주동 로비의 진입이 불가함.
• 202동 외벽 일부 마감재는 커튼월룩이 설치되며, 동 위치에 따라 일부동은 빛의 반사로 인한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음.

• 203동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에 세대창고가 설치됨.
• 203동 지하 1층에 근린생활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용 실외기실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사생활 침해 및 생활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동 동선에 간섭이 있음.
• 203동 정면에 쓰레기보관소가 설치됨.
• 203동 배면에 DA, 자전거보관소, 주민운동시설(실외배드민턴)이 설치됨.
• 203동 좌측면에 어린이놀이터가 설치됨.
• 203동과 207동 사이 지하1층에 맘스키즈라운지, 키즈체육관, 락카룸, 사우나, 웰컴라운지가 설치됨.
• 203동과 207동 사이 지하2층에 다목적체육관, 실내골프센터, 탁구장, 휴게라운지, 강사실, 창고, 락커룸이 설치됨.
• 203동 1~4호 라인(84A-1, 84C-1타입) 1~6층 침실1,2 창호에 집광채광 시스템이 설치됨.

• 204동 지하 2층, 지하 3층에 세대창고가 설치됨.
• 204동 지하 2층에 우수저류조 및 기계실이 설치됨.
• 204동 정면에 탑라이트, 쓰레기보관소가 설치됨.
• 204동 우측면에 외부계단, 어린이놀이터가 설치됨.
• 204동 배면에 키즈클럽(보육시설), 유아놀이터가 설치됨.
• 204동 3호라인 74A-1타입은 침실2와 엘리베이터 승강로가 연접되어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04동 5호라인 74B-1타입은 욕실2와 엘리베이터 승강로가 연접되어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04동 1~5호 라인(74A-1, 74B-1타입) 1~6층 침실1,2 창호에 집광채광 시스템이 설치됨.
• 204동 2호라인 옥상에 tv공청안테나 설치 예정이며 전파상태에 따라 설치 위치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205동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에 세대창고가 설치됨.
• 205동 3호라인 84A-1타입은 드레스룸과 엘리베이터 승강로가 연접되어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05동 배면에 KIDS STATION(맘스스테이션)이 설치됨.
• 205동 배면에 차량 회차로가 설치되어 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 분진, 불빛 등에 의한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시 유의하시기 바람.
• 205동 좌측면에 경비실 및 문주가 설치됨.
• 205동 정면에 쓰레기보관소가 설치됨.
• 205동 1,2호 라인 정면에 어린이놀이터 탑라이트가 설치됨.
• 205동 1,2호 라인 좌측면에 DA가 설치됨.
• 205동 1~4호 라인(84A-1, 84C-1타입) 1~6층 침실1,2 창호에 집광채광 시스템이 설치됨.

- 206동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에 세대창고가 설치됨.
- 206동 지하 1층에 관리사무소, 용역원실, 시니어클럽(경로당)이 설치됨.
- 206동 지하 2층, 지하 3층에 기계실, 저수조, 펌프실 등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사생활 침해 및 생활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206동 3호라인 84A-1타입은 실외기실과 엘리베이터 승강로가 연접되어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06동 배면에 쓰레기보관소가 설치됨.
- 206동 좌측면에 DA가 설치됨.
- 206동 1~4호 라인(84A-1, 84C-1타입) 1~6층 침실1,2 창호에 집광채광 시스템이 설치됨.
- 206동 필로티에 부대시설 실외기실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의 경우 소음, 진동 등이 발생 할 수 있음.

- 207동 우측면에 외부계단 및 엘리베이터가 설치됨.
- 207동 배면에 쓰레기보관소, 어린이놀이터가 설치됨.
- 207동 지하 2층, 지하 3층에 세대창고가 설치됨.
- 207동 지하 2층에 부대시설 오배수펌프실이 설치됨.
- 207동 지하 1층에 피트니스센터, 라운지카페 등이 설치됨.
- 207동 지하 1층은 전체 부대시설로 계획되어 주동 로비의 진입이 불가함.
- 207동 지하 1층은 전체 부대시설로 계획되어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사생활 침해 및 생활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동 동선에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207동 1~5호 라인(74A-1, 84A-1, 84C-1타입) 1~6층 침실1,2 창호에 집광채광 시스템이 설치됨.
- 207동 필로티에 부대시설 실외기실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의 경우 소음, 진동 등이 발생 할 수 있음.

- 208동 지하 2층, 지하 3층에 세대창고가 설치됨.
- 208동 2호라인 84C-1타입은 욕실2와 엘리베이터 승강로가 연접되어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08동 정면에 탑라이트, 어린이놀이터, 쓰레기보관소가 계획되어 있음.
- 208동 1호 라인 정면에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사생활 침해 및 생활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동 동선에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208동 배면에 DA, 민방위급수시설이 설치됨.
- 208동과 209동 사이에 외부계단이 설치됨.
- 208동 1~4호 라인(84A-1, 84C-1타입) 1~6층 침실1,2 창호에 집광채광 시스템이 설치됨.

- 209동 정면에 지하주차장 램프가 설치되어 차량 진출입 및 운행으로 인한 소음, 분진, 불빛 등에 의한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209동 정면, 배면에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사생활 침해 및 생활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동 동선에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209동 남측에 근린생활시설용 쓰레기보관소가 설치됨.
- 209동 좌측면에 외부계단이 설치됨.
- 209동 배면에 DA, 자전거보관소, 쓰레기보관소가 설치됨.
- 209동 지하 3층에 세대창고가 설치됨.
- 209동 지하 2층에 근린생활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용 주차장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사생활 침해 및 생활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동 동선에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209동 지하 3층에 근린생활시설용 기계실/전기실, 소화수조실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09동 2호라인 84C-1타입은 욕실2와 엘리베이터 승강로가 연접되어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09동 필로티에 근린생활시설 실외기실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의 경우 소음, 진동 등이 발생 할 수 있음.
- 209동 지하 2층은 지하주차장에서 주동 로비의 진입이 불가함.(지하3층에서만 진입가능)

- 210동 정면에 지하주차장 램프가 설치되어 차량 진출입 및 운행으로 인한 소음, 분진, 불빛 등에 의한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210동 정면에 KIDS STATION(맘스스테이션), 경비실이 설치됨.
- 210동 2층 3호 세대의 거실 및 침실 창호는 인접한 외부엘리베이터 및 계단실 시설물과의 설계상 간섭으로 인하여 일조권 및 조망권이 침해 될 수 있으며, 해당 세대의 계약자는 본 설계상의 제약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에 임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추후 변경이나 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210동 지하 2층, 지하 3층에 세대창고가 설치됨.
- 210동 배면에 쓰레기보관소, 탑라이트, GREEN CAFE(그린카페)가 설치됨.
- 210동 우측면에 DA가 설치됨.

- 211동 지하 2층, 지하 3층에 세대창고가 설치됨.
- 211동 3호라인 84A-1타입은 실외기실과 엘리베이터 승강로가 연접되어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11동 좌측면에 DA, 쓰레기보관소가 설치됨.

- 211동 배면에 자전거보관소, 어린이놀이터,가 설치됨.
- 211동 136A 타입 테라스에는 청소, 유지・관리용 고리 및 우수선홈통이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211동 136A 타입 테라스 콘크리트 턱 및 난간은 높이·길이·위치·두께·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11동 136A 타입 테라스는 각 타입별로 크기・위치・테라스 출입 방법 등이 서로 상이하며, 다소 불합리한 공간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유의사항

- 견본주택은 74B,84A,101A 타입만 설치되며 견본주택에 미설치된 타입에 대해서는 분양상담을 통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평면 및 마감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마감자재 및 설치제품은 자재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사유로 본공사 및 하자보수 시 동질 또는 동가의 다른 제품(타사제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은 추가선택품목이 포함되어 시공되어 있으므로 확장기본형(유상옵션 미포함)의 경우 반드시 당사 홈페이지 및 카탈로그를 참고하신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사진 등은 당사에서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한 사항이 있으므로 사업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양지하신 후 계약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은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폐쇄,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견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이고 내부 촬영 동영상의 복사, 반출, 캡처 등을 통한 외부 유출은 절대 불가하며 촬영방식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품목, 추가선택품목, 전시품목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고, 본시공시 계약내용에 따라 설치될 예정이며, 추가선택품목, 견본주택 연출용 품목(전시품목 등) 및 공간 확보(주방, 전자제품 사용공간 등)부분 등에 대해 계약자는 사전에 견본주택에서 충분히 확인한 다음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각종 소품가구(침대, 소파, 책상, 의자, 식탁, 커텐, 액자, 조명, 블라인드, 침구류, 카펫 등 포함) 및 벽 장식패널 마감, 디스플레이 가전(TV,세탁기 등), 기타 전시용품 등은 분양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주차장, 승강기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최종사업계획 승인도서(변경승인 및 신고포함)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 시공된 현관 방화문, 가구, 창호(향후 풍압테스트에 따라 조정)등은 본 공사 시 입찰결과에 의해 제조사, 브랜드, 하드웨어, 일부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등은 연출을 위한 조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연출용 조명은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음.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므로 미확장형 세대 선택 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등을 확인,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 시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외부창호류, 세대내 목창호류, 가구류, 유리,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본 공사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VR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필요한 전기, 설비기기 등은 표현되지 않았고, 본 공사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화재 감지기 및 스프링클러는 견본주택 소방설비로 실제 본 공사 시 위치 및 개소 등이 상이하며, 본 공사 시 소방법에 따라 시공됨..
- 견본주택에 노출되어 설치된 전시조명은 연출용이며,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음.
- 견본주택에 표시되거나 설치된 천장 환기구, 화장실 배기팬, 에어컨 매립배관, 온수분배기, 우/오수 배관의 위치, 선홈통과 수전의 위치, 온도조절기, 바닥 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 등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가전, 가구와 다르게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의류건조기 등)가구 등은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에 설치된 가구 사이즈를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모형의 조경 및 식재, 시설물, 드라이에어리어, 부대시설, 근린생활시설, 실외기실 등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배선기구, 조명기구, 분전함의 설치 위치 및 수량, 사양 등은 본 공사 시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 설치된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방문객을 위한 냉난방겸용 제품으로 본 공사 시 냉방전용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이 추가선택품목 선택 시 설치되며, 장비사양 및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단지모형, 커뮤니티시설 및 단위세대 이미지 등 포함), 카탈로그 또는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투시도 등의 이미지, 사진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본시공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전단지, 리플렛, 카탈로그 등 인쇄물, 견본주택 내 사인물)의 모든 이미지와 내용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일체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광고, 홍보물에 표시된 각종사실(학교, 도로명, 주변 시설물 등)은 허가관청 및 국가시책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학교 및 학군의 경우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분양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커튼, 침대, 식탁, 책상, 의자, 가전, 소파, 거실장 등의 이동식 가구, 보조조명, 액자 및 소품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 시 제공되지 않음.
-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 및 색채는 시공중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의 결과, 법규의 변경, 디자인의 개선 등에 따라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공사 시 상기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사양, 우물천장, 주방가구, 일반가구, 수납공간의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세대내부 및 아파트 단지 내외부의 요소들이 모두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공급안내서, 분양계약서를 살펴보시고 현장을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람.
- 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 법규 변경, 시공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상의 유의사항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에 시공된 발코니 창호, 현관, 방화문, 실외기실 도어 및 그릴, 슬라이딩 AL도어(추가선택품목)등은 본 공사 시 입찰결과에 의해 제조사, 브랜드, 하드웨어, 프레임 일부, 개폐방향, 형태가 상이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배선기구,월패드,콘센트,스위치의 제품사양은 동질 및 동급 및 동가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위치 또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환기 디퓨저, 온도조절기 및 바닥 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쿨러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공사와 무관하며 실시공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됨.

■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 표기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등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방법을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호 제2항 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적용	가정용보일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제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조소비효율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 설치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1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를 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공동주택 성능등급의 표시**

- **녹색건축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는 예비 인증으로서 공사 중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비 인증서가 변경되는 경우 공동주택성능등급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예비인증서	친환경주택 평가서
A블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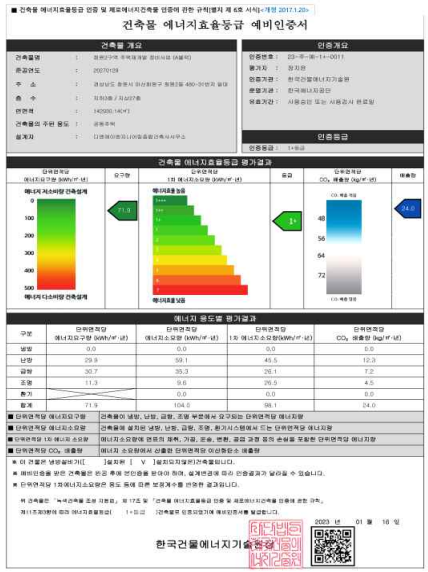	
B블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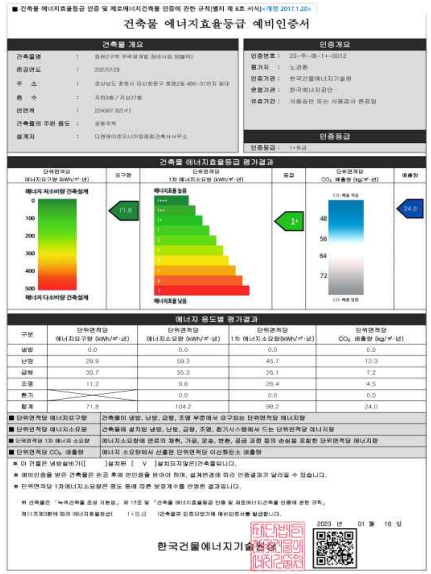	

1. 각 예비인증별 개별항목에 대한 등급 및 점수는 현장 여건 및 본인증 심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각 예비인증서 제시된 시험성적서 및 특정 모델명이 표기된 자재 등은 평가를 위한 참고자료이며, 이는 본시공시 현장 여건 및 인증기관 협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내진성능 및 능력 공개**

• 본 아파트는 건축법 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 3 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 함.

구 분	내진능력(MMI 등급)
내진등급 Ⅰ	VII-0.239g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구 분	회사명	감리금액(부가세 포함)
건축감리	㈜정림씨엠건축사사무소, ㈜케이지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9,824,118,480원
전기감리	㈜전인씨엠건축사사무소	1,263,962,000원
소방 / 정보통신	현대공영(주)	1,012,000,000원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보증서번호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제01292026-101-0003800호	**₩430,624,740,000**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 허위계약 ·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 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회생절차개시신청·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회생절차개시신청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분양대금채권의 양도에 관한 사항 : 분양자(매도인)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하기로 함.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사업주체	시 공 사
상호	회원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한신공영(주)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남1길 49, 302호 (회원동, 삼성메르빌아파트상가 3층)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덕평로 82
사업자등록번호	608-82-12801	114-81-04605

■ 기타 유의사항

• 모든 부동산 계약 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의거 거래 당사자인 사업주체 및 계약자는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합니다.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공급계약 체결시,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신고를 위임하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하며, 만일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의 미제출 등 신고에 필요한 협조를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 등 일체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필수 안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아파트 대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제4항에 따라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소 또는 해당 관할법원에 부동산등기용 개별번호 발급을 마치고 국내 부동산을 취득 및 신고하여야 합니다.

- 영리목적 외국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 거소 요건에 따라 일부 외국인은 중도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본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를 근거로 공급계약의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공급계약 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함)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당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 및 공식 홈페이지 안내

• 운영기간 : 분양종료시까지(분양일정에 따라 견본주택 관람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아래 대표번호를 통하여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견본주택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 480-31번지
운영시간	10:00 ~ 17:00
분양문의	055-295-1117
공식홈페이지	https://cw-thehue.com